

2023. 가을 통권 제3호

전북노동 브리프

JEONBUK LABOR BRIEF

초점 : 지역 발전 담론의 현실

- 지역형 일자리의 현재와 쟁점
- 세계잼버리 사태로 본 새만금 간척사업의 미래

리뷰

-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조사연구」
-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노동환경 실태조사」
- 의견 분분한 '포괄임금제' 대체 뭐길래

칼럼

- 전북교육청 돌봄전담사 정신적 스트레스 산업재해 사건
- 2023년 군산, 비극을 멈춰야 한다

동향

- 2023년 2분기 전북지역 고용 · 노동 · 산업 · 가계 동향

현장

- 2023년 3분기 전라북도 주요 노동 소식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 법률지원센터

2023년 가을
통권 제3호

계간 전북노동브리프

목차

초점 : 지역 발전 담론의 현실

- 지역형 일자리의 현재와 쟁점 3
- 세계잼버리 사태로 본 새만금 간척사업의 미래 20

리뷰

-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조사 연구 33
-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노동환경 실태조사 42
- 의견 분분한 '포괄임금제' 대체 뭐길래? 48

칼럼

- 전북교육청 돌봄전담사 정신적 스트레스 산업재해 사건 59
- 2023년 군산, 비극을 멈춰야 한다 64

동향

- 2023년 2분기 전북지역 고용 · 노동 · 산업 · 가계 동향 73

현장

- 2023년 3분기 전라북도 주요 노동 소식 99

전북노동브리프

JEONBUK LABOR BRIEF

편집위원장

김연탁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편집위원

강문식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조용화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박영민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법률지원센터)

황선호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법률지원센터)

김음표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법률지원센터)

발행일 | 2023년 10월 18일

발행인 | 엄경석 · 박영민

발행처 |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 법률지원센터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7 3층

전 화 | 063.256.5003

이메일 | kctu.jbi@gmail.com

ISSN | 2982-6101

값 7,000원

01

전북노동브리프



초점

지역 발전 담론의 현실

- 지역형 일자리 사업의 현재와 쟁점
- 세계잼버리 사태로 본 새만금 간척사업의 미래



전북노동브리프 Jeonbuk Labor Brief_____

지역형 일자리 사업의 현재와 쟁점*

-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강문식(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지역형 일자리 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쟁점

지역이 주도하여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2019년 광주를 시작으로 강원, 경남, 경북, 부산, 전북 등 6곳에서 진행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지역형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13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지역형 일자리는 중앙정부 중심의 고용정책을 벗어나 지역 경제주체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지역 고용정책의 강조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다. 지역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는 이들은 지역을 전국 차원의 평균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역 특유의 성장경로를 따라 형성된 산업구조, 혁신역량, 숙련수준·생산성 등이 축적되어 나타난 고유의 노동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공간으로 간주한다. 이들에게 지역 고용정책은 지역투자와 그 결과

* 본 글은 「아래로부터」 2023년 가을호에 게재한 글을 일부 수정한 내용을 밝힌다.

로서 일자리의 양적확대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원하청 관계 개선, 작업장 혁신 등 일자리의 질적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접근된다. 지역형 일자리 사업의 출발점이 된 광주형일자리 모델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연대와 혁신이란 가치가 포함된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한다. 차별화된 전략적 연대의 활성화를 통해 광주지역에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광주지역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왜곡을 사회통합적으로 개혁하여 그러한 방법론이 타 지역 및 타 산업으로 확산되도록 도모한다는 것이다(노광표, 2019; 김윤호, 2020; 박명준 외, 2015; 박명준, 2019).

지역 고용정책을 강조하는 논의에서 보이는 공통된 지반은 한국 노동시장이 왜곡되어 있다는 관점이다. 여기에서 노동시장의 왜곡은 과보호된 1차(내부) 노동시장과 단기적이고 유연한 고용관계를 표준으로 하는 2차(외부) 노동시장 사이의 분절을 뜻한다. 분절 노동시장론은 양극화를 넘어 한 국가 안에 서로 다른 원리로 작동되는 복수의 노동시장이 존재한다고 바라보고 기업 내 분절보다 기업 간 분절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내부노동시장이 강화되어 외부노동시장과의 격차가 확대되면 내부노동시장 고용 규모가 줄어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게 된다. 분절 노동시장론은 그 대안으로 초기업적 노동기준, 임금률 설정을 제시한다. 기업별 노조가 우점한 한국의 집단적 노사관계 아래에서 초기업적 노동기준의 설정은 노사관계의 질적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나 법·제도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이 지점에서 정책제안·입안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의 결정 주체를 노와 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로 삼고 이를 통해 현행 임금 체계를 변형시키고자 한다. 이때 기업별 노·사를 벗어난 중립적인 제3자는 대개 ‘노사민정 거버넌스’가 담당한다(정이환, 2013; 정이환, 2018; 김경근, 2018).

분절 노동시장론과 이에 기반한 지역 고용정책의 강조는 노동계급 내 격차축소를 주요 노동 의제로 부각시키면서 2차 노동시장의 임금을 상향 조정해서 격차를 축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불균등 관계를 평탄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몇 가지로 나눠 쟁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 분절의 원인과 양극화 해소 방안의 쟁점이다. 주요 분절 노동시장론자들은 한국 분절 노동시장의 형성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저항이 기업내부노동시장에서 신자유주의화를 막은 결과라고 주장한다(정이환, 2013). 따라서 '왜곡된 노동시장'의 교정이라는 주문은 1차 노동시장의 과보호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치적 함의를 내포한다. 그러나 정이환(2013)이 지적하듯 신자유주의화는 국가, 자본의 적극적 전략이었던 반면 노동조합은 그에 대한 수동적 방어에 그쳤으며, 이미 한국의 1차 노동시장에서도 단기적이고 유연한 고용관계가 사회적 표준으로 작동한다. 이에 김철식(2014)은 기업별 분절에 노동조합이 영향을 미친 방식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조의 저항보다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쇠퇴, 노동조합의 권력약화가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초기업적 노사관계의 형성에 노충의 노동대표성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도 초기업적 노사관계의 미형성은 노조 조직률 정제와 노동조합 권력약화의 결과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 해소의 주요 방안으로는 적정임금이 제기된다. 적정임금의 도입은 이를 통해 확보된 비용절감분의 일부를 하청업체로 향하도록 하고 고임금이 투자동력을 제약하는 것을 완화시켜 신규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박명준, 2015). 사실상 산업 차원의 총액임금론을 제시하는 것인데 임금분배율¹⁾이 노·자 간 계급투쟁에 의해 결정된다는 현실을 도외시 하는 것이다. 이 구상에 따르면 1차 노동시장의 '과보호'를 약화시키고 2차 노동시장의 낮은 조직률을 보완하는 역할을 지자체(정부)·전문가·시민단체 등이 보완한다. 이는 노·자 간 이해가 적대적이고 화해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인식하는 관점이자, 선한 테크노크라트의 존재 가능성을 전제하는 엘리트주의이기도 하다. 이같은 구상은 1차 노동시장에서의 조직력, 협상력, 그리고 노충의 노동

1) 또는 마르크스적 지표로서 잉여가치율

대표성을 동시에 약화시킨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 임금분배율 약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노동계급의 조직력, 협상력 약화를 더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선한 의도였을지언정 의도와 반대의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기업의 투자 저하의 원인에 대한 쟁점이다. 지역형 일자리 제안자들은 고임금 1차 노동시장 때문에 기업의 투자동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 저하는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함께 지속되어 온 현상이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핵심 원리는 자본이동의 자유화, 즉 경제의 금융화에 있으며 생산부문에서 그 구체적 양태는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나타난다. 애플은 설계와 디자인만 담당하고 자사의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으며, 부품과 조립은 대만 TSMC, 한국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중국 폭스콘 등 해외하청기업이 담당한다. 경제의 금융화는 자본 수익성 약화의 결과이자 원인이다. 노동을 절약하는 기술진보는 자본-노동 비율을 높여 자본의 수익성(이윤율)을 악화시켜왔고 1970년대 이후 그 대응으로서 소유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경제체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후 자본 수익성은 일시 회복되는 듯 했으나 이내 장기 저성장에 직면했고 생산부문의 저조한 투자는 회복되지 않았다. 자본 투자감소의 유인을 임금에서 찾는 것은 이 같은 거시적 동역학을 외면한 입장이다. 기업의 투자 결정에 노동비용이 미치는 영향이 과대평가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자동차 산업과 같은 초국적 기업이 경쟁하는 분야에서 공장의 위치는 해당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노동비용이라는 단일 요인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에게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으로 필연적으로 신규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었으므로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기보다 어차피 만들어질 일자리를 더 안 좋은 일자리로 대체했다고 봐야 한다(김경근, 2018).

세 번째는 지역고용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쟁점이다. 이는 두 번째 쟁점과 연관된다. 지역고용정책의 강조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다. 지역을 강

조하는 지방자치 담론은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 조류였으며 이는 국가 재구조화 차원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 이념을 실행하는 과정과 관련된다. 발전주의 패러다임에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정부의 개입에 의한 성장보다는 지역의 지식과 기술의 시장성과 경쟁성을 강조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에 기초한 성장 전략으로 연결되었고 이때 저개발 지역의 개발·발전은 지역 자력에 기초한 기업 유치를 통해 시장 원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된다. 지방자치 담론은 거버넌스에 기초한 지역 주체성을 강조하며 한국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제도적 기구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고안된다(김순은, 2018; 이용균, 2014; 강문식(2020)에서 재인용). 앞서 언급했듯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원리로 삼는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상대화하고 그 자리를 지역이 대체할 때 자본이동의 유연성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²⁾. 한국에서 고용정책의 지방 분권이 확대되어 감에도 지역 간 경제·산업·노동 격차가 확대되는 현실은 지역고용정책과 거버넌스가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일환이라는 점과 연관된다. 결국 지역분권·지방자치로서 지역고용정책은 그 민주적 외양과 달리 실질적 지역 성장, 격차 완화, 민주성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강문식, 2020). 이때 산업의 장기적 전망과 가치사슬의 고려 없는 지역 고용정책은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쟁점과 논란을 뒤로하고 지역형 일자리 사업은 차곡차곡 확대되어 왔고 군산형 일자리도 지역 고용정책 담론 속에서 출발했다. 군산형 일자리는 지역형 일자리 사업이 갖는 쟁점과 한계를 모두 공유한다.

2)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를 '미국식 사회경제 유형'으로 규정하고 불안정화를 그 척도로 간주하는 관점은 현실과 괴리된다.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극대화하는 구조조정은 불안정 시장의 확대를 위해 불안정화를 차등적으로 관철하여 이중구조화하며, 이 차등적 관철 역시 신자유주의의 한 속성이 된다.

2.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현재와 문제점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골자는 군산형 일자리 협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산/새만금 지역을 전기자동차클러스터로 삼고 협약참여 기업과 노동조합이 적정임금, 적정납품단가,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생협의회 내에 ‘갈등조정 중재 특별위원회’, ‘임금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한다.

이는 대체로 노동자의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반면 참여기업에 대한 의무조건은 ‘본사 또는 공장이 군산/새만금 지역에 소재할 수 있도록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거나 이사회에 참관하게 하는 것 등에 그친다. 아래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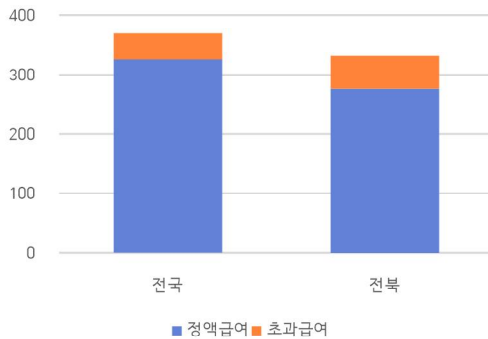
○ 임금 상한선 도입

군산형 일자리는 임금의 상한선을 전북 제조업 기업체 규모별 평균급여로 정했다. 그러나 전북과 전국 사이에 상당한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기준 설정은 ‘상생형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전북의 저임금을 고착시키게 된다. 또한 기업체 규모별 평균 임금을 임금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규모별 임금 격차 역시 그대로 고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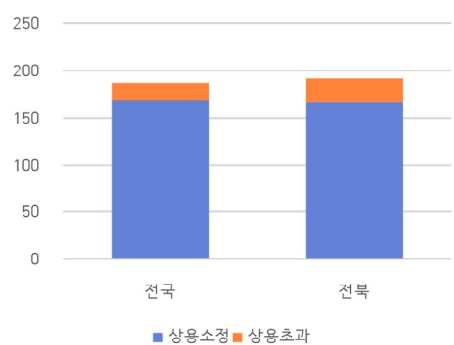
군산형 일자리 임금관리위원회에서 임금 기준으로 삼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1년 전북 제조업 전체 노동자의 평균 상용정액급여는 276만 원이었고, 전국은 325만원으로 월 평균 49만 원의 격차가 존재한다. 전라북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초과노동을 통해 보충하고 있지만 임금 총액 역시도 전국 평균에 비해 낮다. 결국 규모별로도 전라북도 제조업 5~9인 사업체는 245만원, 10~29인은 263만원, 30~99인은 286만원, 100~299인은 277만원, 300인 이상은 293만 원으로 그 격차가 월 평균

48만 원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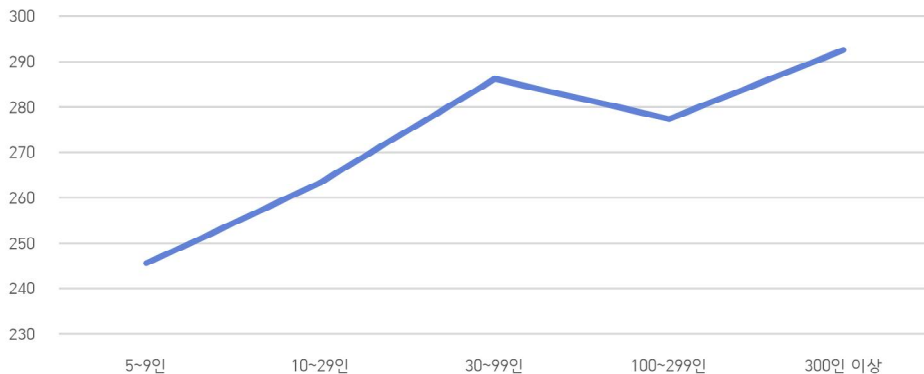
[그림 1] 제조업 사업체 평균 월 임금(2021년)
(단위: 만 원)



[그림 2] 제조업 사업체 평균 월 노동시간(2021)
(단위: 시간)



[그림 3] 전라북도 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상용정액급여(2021)
(단위: 만 원)



지역형 일자리가 사업체 규모 간 분절을 강조하며 그 격차를 축소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군산형 일자리는 적정임금의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별 평균임금을 사용하면서 분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두었다. 결국 군산형 일자리의 임금 모델은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며, 오히려 임금의 상한선만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서」

제8조 (적정임금의 실현 및 선진임금 체계 도입) '노·사상생'을 구현하기 위해 전기차 클러스터 내 모든 협약 참여기업은 기업의 고용 규모별 평균수준의 임금을 지향하고 선진임금체계를 적극 도입한다

- ① 참여기업은 각 기업의 고용 규모별 전북지역 제조기업 임금의 평균수준 임금을 지향한다.
- ② 참여기업은 임금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임금항목 단순화와 기본급 비중을 향상한다.
- ③ 참여기업은 직무·직능·성과중심의 선진임금체계를 설계 및 적용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위원단 구성과 연구용역 발주 등의 방법을 적극 고려한다.
- ④ 참여기업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지향의 임금체계를 도입한다.

게다가 현재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의 평균 임금은 사업체 규모를 반영한 전라북도 제조업 평균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2022년에 개최된 임금관리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와 코스텍의 2021년 임금 총액은 각각 1인당 3,700만 원, 3,350만원이다. 그러나 임금관리위원회가 기준으로 삼는 통계자료인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두 기업과 동일 규모 사업체의 2021년 평균임금은 각각 4,273만 원, 3,51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1〉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2021년 평균 임금과 전라북도 제조업 동일규모 사업체 평균 임금

(단위 : 천원)

	명신	에디슨모터스	코스텍
2021년 평균 임금	56,833	37,000 (30,000)*	33,500
전라북도 제조업 동일규모 사업체 평균 임금	43,974	42,734	35,118

자료 : 「2022년 임금관리위원회 회의자료」(2022.5.13.), 「군산 상생형일자리 '22 임금구간 보고서」(2022)

* : 2022년 임금관리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의 2021년 기준연봉은 30,000,696원임.

○ 노동시간

협약에 따르면 근로시간저축제는 12시간 시간외근로 중에서 수당은 4시간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에 적립한다는 내용이다. 저축의 단위기간은 3개월

로 하되,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4개월째에 수당으로 지급하며 노동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저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근로시간저축제는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최대 80.5시간)제를 추진하며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노동개혁 정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초과하는 연장노동, 휴일노동 등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보상하도록 정하며,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군산형 일자리 협약서의 참고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저축제는 연장·휴일 노동시간의 1.5배가 아닌 1배로 보상하도록 설계되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이다.

협약서에 따른 근로시간저축제는 사업자에게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데 그 효과는 탄력근로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통상적으로는 물량 감소로 인한 휴업 시 노동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는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시간저축제를 이용하면 물량이 많을 때에는 연장, 야간 근무에 대한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물량이 없을 때에는 휴업수당 지급을 회피할 수 있다. 임금 총액으로 따질 때에도 노동자에게 불리해진다.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서」

제14조 (적정노동시간의 적용) ③ 초과노동시간(초과근로, 연장근로, 휴일특근)에 대하여는 주당 4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법정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근로시간저축계좌에 저축한다.

제15조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① 참여기업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운영하며 주당 44시간을 초과하는 초과노동시간은 근로시간저축계좌에 저축한다.

② 참여기업은 노동자가 저축된 시간을 만 3개월이 되도록 사용하지 않을 경우, 4개월째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노동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저축할 수 있다.

○ 노동 불안정화

자유로운 인력 전환배치는 고용 신축성을 최대한 높인다는 것인데 노동자 입장에서

는 고용 불안정하다. 노동력은 자본의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기계, 장비가 아니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 협약에서는 “클러스터 내 전환배치는 노사간의 합리적 의견교환을 토대로 가능”하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자유로운 전환배치를 허용했다. 이는 심각한 노동권 훼손이며, 극단적으로는 클러스터가 일종의 파견업체화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서」

제22조 [전환배치]

② 그 일환으로 생산라인별 물량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적기 공급을 위하여 클러스터 내 물량의 이관 또는 클러스터 내 집단적 전환배치 등이 신속히 가능하도록 노동자는 생산성 향상 및 전환배치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 노동자의 클러스터 내 전환배치는 노사간의 합리적 의견교환을 토대로 가능하며, 클러스터 밖으로 전환배치는 노조(노사협의회) 또는 상생협의회의와 합의를 거쳐 실시한다.

○ 노동3권 제한

교섭의 틀을 협의회 내로 제한시키고, 5년 간 중재조정안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노동3권 제한이다. 애써 긍정적으로 해석해보면 지역을 단위로 한 초기업단위 교섭의 일종으로 여길수도 있으나, 이는 지역협약이 확대 적용되었을 때 미조직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이 상승할 때에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섭의 상한선이 ‘전북 제조업 평균임금’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조건 하향화를 피할 수 없으며, 노동3권 제한은 이 상한선을 공고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실제 군산형일자리 임금관리위원회가 정한 2023년 적정임금 인상률은 3.1~4.51%로 전년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서」

제11조 (적정임금의 실현)

① 상생협의회 내 임금관리위원회는 노동자의 임금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별, 직종별 적정 임금구간과 매년 임금상승률을 결정하여 참여기업에 제시하

여야 한다.

제19조 [2단계 교섭/공동교섭-기준임금 합의, 사업장별교섭-실제 임금교섭]

① (1단계 공동교섭) 클러스터 내 각 기업의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사용자협의회 및 노동자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교섭하여 임금을 결정한다.

가. 임금관리위원회는 노동자의 임금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별, 직종별 적정 임금구간과 매년 임금상승률을 결정하여 공동교섭 위원에게 제시한다.

○ 사업계획의 현실성

군산형 일자리의 더 큰 문제는 협약 내용에서의 노동권 제약보다 군산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산업 계획의 현실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본래 계획에 따르면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등의 기업이 2024년까지 5,171억 원을 투자하고 1,704명을 고용하여 24만대의 EV SUV, 버스, 트럭, 화물차를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업 전 단계에서부터 자동차 산업에서 신차 개발의 난이도와 사업의 현실성, 군산형 일자리가 상용차 제조업 부문의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고용·생산·투자 실적은 이와 같은 문제점과 지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2022년 8월까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용은 279명 늘었고 생산은 1,649대 이루어졌다. 투자액의 상당액은 명신이 GM군산공장을 매입한 대금이었고, 설비 투자는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2024년이 도래한다 해도 목표치만큼의 고용, 생산,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표 2〉 군산형 일자리 고용·생산·투자 실적

	기업	계획	사업전	'21년	'22년	계	비고
고용 (명)	명신	1,250	187	113	60	173	
	에디슨모터스	257	-	97	-	97	
	대창	86	-	-	-	0	
	코스텍	31	-	6	11	17	
	(주)MPS코리아	80	-	-	-	-	'21. 사업포기
	총계	1,704	187	216	71	287	
생산 (대수)	명신	193,500	-	500	1,389	1,889	다니고EV밴
	에디슨모터스	25,550	-	57	100	157	
	대창	11,841	-	-	-	0	다니고EV밴
	(주)MPS코리아	9,543	-	-	-	-	'21. 사업포기
	총계	240,434	-	557	1,489	2,046	
투자 (백만원)	명신	445,053	146,560	45,000	39,200	84,200	
	에디슨모터스	30,217	17,761	14,300	0	14,300	
	대창	20,000	-	10,000	3,000	13,000	
	코스텍	11,000	-	-	8,400	8,400	
	(주)MPS코리아	10,857	-	-	-	-	'21. 사업포기
	계	517,127	164,321	69,300	50,600	119,900	

주 : 2022년 8월 기준

자료 : 전라북도의회 오현숙 의원

○ 위탁생산의 불안정성

저조한 투자·고용·생산 실적은 위탁생산에 의존하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 모델에 기인한다. 명신은 2021년에 단 500대 생산에 그쳤고 이마저도 대창의 다니고EV밴 모델을 PDI 수준에서 위탁생산 한 것이다. 대창모터스의 다니고EV밴 모델은 중국 중타이 사 제품을 수입해온 것이다. 명신이 2022년부터 위탁생산 중인 마사다밴 역시 중국기업 둥펑쏘콘의 모델이다. 에디슨모터스도 중국산 버스를 SKD 형식으로 수입해와서 판매하는 형식이었고 차량 제작, 생산 기출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명신의 경우 곧 대량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지만 그 계획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초기에 명신은 중국 바이톤(BYTON) 사의 제품을 위탁 생산하겠다고 밝혔으나 바이톤 사가 채무 위기를 겪고 있어 무산되었고 이후에 패러데이퓨처스 사의 제품을 위탁 생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불투명하다. 패러데이퓨처스 사도 바이톤 사처럼 중국의 전기자동차 제조 업체이고 패러데이퓨처스의 CEO가 2019년 10월 15

일자로 미국에서 파산신청을 한 전력이 있다. 또한 페러데이퓨처스는 불확실한 공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명신은 2023년부터 중국 지리자동차의 소형 전기트럭 모델 신상을 조립 없이 수입 판매하고 있다.

○ 기업 지원 사업으로의 귀결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업체들이 협약과 사업 예산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원 받은 항목은 지방세 감면과 상생기금,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등이다. 지방세 감면액은 48억 원, 상생기금 지원 액은 100억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은 327억 원 규모로 집행됐다.

그러나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에게 주어진 지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매개로 파생한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예산이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에게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일자리 사업의 주요 내용은 만 39세 미만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월 16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와 전라북도의 각종 R&D예산도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에게 지원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가변 플랫폼 기반 중소형 전기트럭/버스 및 운영환경 개발」, 「전기자동차 에너지 전주기 활용 기술개발」, 「중전·중소 전기차관련 협업기반 구축」,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플랫폼 개발」,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업 지원사업」,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등으로 총 2,656억 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운용 중이다. (주)명신은 2022년에 「가변 플랫폼 기반 중소형 전기트럭/버스 및 운영환경 개발」 사업에서 30억 원, 「전기자동차 에너지 전주기 활용 기술개발」에서 34억 5천 만원,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플랫폼 개발」에서 22억 원 등을 지원받았다. MPS코리아와 에디슨모터스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서 각각 36억원(2021년), 34억원(2022년)을 연구개발비로 지원받았다.

대출 및 신용보증 형태의 지원도 이루어졌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에디슨모터스가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액을 출연하면서 보증서 발급을 주선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48억원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하게 되었다. 결국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그 손실을 떠안은 셈이다. 에디슨모터스는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고 군산 공장을 포함하여 회사 자산이 KG모빌리티로 매각되었다.

3. 결론

지역형 일자리 사업은 분절이라는 형태의 노동시장의 왜곡을 시정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지역형 일자리 사업은 거시경제 및 자본의 동역학, 글로벌 가치사슬, 적대적 계급 관계에 맹목하며 그 결과 의도와 달리 노동자의 협상력을 약화하고 자본이동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보다 가시적인 지표에서도 지역형 일자리 사업의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 역시 사업 계획에 비해 투자, 생산, 고용 모든 측면에서 부진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다양한 주체의 이해가 맞물려 추진되었다. 주요하게는 GM군산공장 철수로 악화된 여론을 타개하려는 정치세력의 욕망이 작동했고, 제조업의 쇠퇴와 일자리, 소득 감소에 직면한 전라북도의 현실 앞에서 외형적 성과를 통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했던 행정의 요구가 있었다. 왜곡된 노동시장의 교정을 과제로 삼는 정책기획자들의 결합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현재에서 사업 계획의 현실성과 지역 고용정책이라는 두 방면으로의 비판이 제기된다.

사업계획의 현실성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 정책의 밑그림 아래 공공·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군산형 일자리는 이와 같은 토대 없이 외형부터 꾸리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실패가 예견되었다. 단순 조립 수준의 위탁생산을 계획으로 삼았던 만큼 숙련 노동력의 양성 및 공급, 산업 가치사슬 형성 등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역으로 숙련 노동력과 산업 가치사슬의 형성이 고려되지 않는 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늘리는 효과 이상을 갖기 어렵다. 이 같은 조건에서 지역형 일자리 사업은 스스로 표방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2차 노동시장의 확대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태생적으로 갖는다. 게다가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들은 이 사업을 손실은 사회화시키고 수익은 사유화하는 통로로서 활용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사업 시행 자체가 외형적 성과가 되면서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해를 충족시켰으나 그 대가로 사회적 자원을 훼손시킨 셈이다.

지역 고용정책을 강조한 정책기획자들은 지역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1차 노동시장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2차 노동시장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군산형 일자리가 정한 노동조건의 상한선, 노동3권의 제한 등은 모두 2차 노동시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책기획자들이 밝힌 의도와 상반되기까지하다. 일례로 군산형 일자리 임금관리위원회는 사업 참여 기업의 2023년 임금인상률을 작년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권 제약에도 불구하고 군산형 일자리에서 1차 노동시장 기업의 투자는 유치되지 않았다. 위에서 다룬 바와 같이 노동시장 왜곡의 교정이 1차 노동시장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것이라는 가정에 현실성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1차 노동시장의 보호를 해소해야 한다는 구상이 2차 노동시장을 포함한 전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지역 고용정책의 확산이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과 병행되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지역 고용정책의 확산은 결국 기업 유치를 두고 지역별로 규제 훼손 경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때 노동권의 제약은 빠지지 않고 제시되는 선택지다.

일각에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며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다른 곳에 돌아갈 수 있던 전라북도의 자원을 흡수했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전라북도 노동·산업·경제에 미친 부정적 효과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은 현재까지도 정부·지자체의 지원에 힘입어 사업의 장기적 전망을 입증하지 않고도, 그리고 뚜렷한 생산과 매출 없이도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여 사회적 자원을 훼손하는 사업은 지역 발전과 공공복리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 또한 노동권을 제약하거나 노동조건의 상한선을 도입해 일자리를 유치하자는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노동조건의 하한선이다. 숙련 노동력의 형성, 산업의 가치사슬 등을 포함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역 노동·경제·산업 정책이 필요하며 그 최종책임자는 중앙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문식. (2020). 국내 지방정부 노동정책 검토. 전라북도 노동정책 발전 방안 연구.
- 김경근. (2018).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과 반대의 이유.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진단 토론회.
- 김순은. (2018).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생적 추진전략. 지방행정연구, 32(1).
- 김윤호·김기덕. (2019).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김철식. (2014). 단절과 연속성, 신자유주의와 분절:고용체제의 한국적 특성에 대한 치밀한 모색. 경제와사회, 101.
- 노광표. (2019). 상생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발전방안.
- 박명준 외. (2015).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명준. (2019). 지역 중심의 사회연대와 개혁적 일자리 창출. 전라북도 노사민정 심포지움.
- 이용균. (2014).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개발의 방향. 한국지리학회지, 3(2).
- 정이환. (2013). 한국 고용체제론. 후마니타스.
- _____. (2018).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 구조와 대안모색. 노동리뷰, 163.

세계잼버리 사태로 본 새만금 간척사업의 미래*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온통 폐허다...
- 뼈아픈 후회(황지우)

11일 태풍이 지나고 스카우트 대원들이 떠난 쓸쓸한 잼버리 부지를 내려 보면서 떠올린 시다.

23년째 새만금에 오가면서 잠시 쉬어가던 불안 하서면 바람모퉁이 전망대. 과거에는 노을과 갯벌과 바다를 내려다 보는 경관 명소였다. 이틀전만 해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부지 텐트촌을 보러 온 시민들과 취재 차량, 경찰들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8.8km² (884ha) 드넓은 잼버리 부지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여그서 먼 텐트를 치고 잼버리 한다고 그렸데야, 다 떠죽게 생겼고만”, “한 번 나와 보지도 않았는가 보네, 다 진창인디” 두런두런 잼버리 이야기가 들린다. 동료는 준비 부족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새만금 잼버리가 ‘다크 투어리즘(역사 교훈 여행)’ 명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말을 내뱉었다.

* 본 글은 전북생명평화포럼(준)이 8월 30일 개최한 「잼버리를 계기로 본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 대화마당의 주제발표문이다.



새만금 사업으로 방조제가 막히기 전만 해도 잼버리 텐트가 쳐진 곳은 갯벌이었다. 만경강과 동진강이 오랜 세월, 유기물을 실어다 만든 풍요롭고 기름진 하구 갯벌이었다. 칠산 바다 물고기들이 산란하러 모여들고, 질 좋은 백합과 바지락이 지천이었다. 흰발농계를 비롯 한 수많은 게와 갯지렁이, 망둥이, 쟁퐁어들이 부지런히 갯벌을 오갔다. 멀리 남반구 뉴질랜드에서 북반구 툰드라까지 약 30,000Km를 오가는 도요물떼새 등 많은 국제적인 이동 철새의 휴게소였다. 새만금 갯벌에 기대어 살아가는 주민의 삶도 풍요롭고 윤택했다. 넓게 보면 법정 보호종만 무려 40여 종에 이르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육지 숲보다 탄소 흡수력이 50배 이상 빠른 블루 카본 갯벌로 이용 가능성도 높다. 그 귀한 하구 갯벌. 전북 갯벌의 90%가 사라졌다.



잼버리가 열린 해창 갯벌은 새만금 살리기 환경운동의 성지와 같은 곳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갯벌이 보존되길 바라며 향나무를 묻는 매향제를 지내고, 하나둘 장승을 세웠다. 2003년 3월,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자연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65일간 서울까지 참회의 삼보일배를 시작한 곳이다. 2006년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갯벌과 갯등은 육지로 변하고 있지만 잼버리를 유치하

던 당시만 해도 일부는 갯벌이 유지되고 있었다.

단 2주간의 행사를 위해 편법으로 기름진 갯벌을 매립하는 공사를 막지 못한 환경운동가의 회한. 잼버리 정신만으로 극복이 어려운 열악한 부지 조건과 준비 부족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전북도민으로 후회가 겹쳤다.



최근 3년간 공사전 후 과정을 주욱 지켜왔고, 개영식 직전인 7월 13일과 19일, 두 차례 야영 부지 현장 준비 상태를 둘러봤다. 내 눈에는 절망 그 자체였다. 지금 여기 이런 상태로 4만 3천명이 모이는 잼버리를 치룬다고? 2주 남긴 상태인데 화장실, 샤워장, 집회장 여기저기 공사판이었다. 전기도 수도도 연결이 안된 곳도 보였다. 큰 대회를 목전에 두고 일사분란하게 바빠 움직이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뭔가가 될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절망스러웠다.

잼버리 부지는 작고 가는 펄 모래를 쌓아 올린 무른 땅이다. 최근야 매립이 끝나 비가 내려도 굳어질 시간이 없었다. 적은 비에도 진창이 되고 웅덩이가 생겼다. 모기가 들끓고 해충이 창궐했다. 필요 이상으로 넓게 매립해서 물 빠짐도 오래 걸린다. 너른 논을 만든 거니 기우기가 거의 없어 자연 배수가 되지 않는다. 빗물을 모으는 집수정

100곳을 만들고, 추가로 수로를 냈지만 소용없었다. 피약별이 내리쬐면 습기가 올라와 찹질방과 다름없었다. 그늘막으로 해결할 정도를 넘겼다. 염생식물이 자랄 정도로 염분 농도가 높아 나무를 심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다. 대형 화분에 심은 덩굴식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해 기능을 하지 못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대혼돈의 시작은 폭염과 더러운 화장실, 곰팡이 핀 음식에서 시작한 대 혼돈의 잼버리는 결국 파국으로 끝이 났다. 스카우트 대원 간 우정과 환대, 지도자의 헌신, 과정 활동을 지원한 도민을 빼고, 정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그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부처, 전라북도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대책이 충분하다며 호언장담하면서 사진만 찍고 돌아갔던 이들이 누구인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혼돈의 야영장 사태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100% 준비 부족이다. 하지만, 새만금에는 일반적인 준비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다.

새만금 잼버리를 망친 것은 폭염이 아니다. 여름철 행사에 의례껏 있는 일이다. 그늘막, 급수대, 샤워장, 화장실 등은 시설 지원만 늘리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잼버리 초기의 혼란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불편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았는가. 보통 이런 일들은 적절한 예산 배정과 계획대로 집행만 된다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키우고 해결을 어렵게 만든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 바닷모래와 펄을 퍼 올려 갯벌 위에 눈을 만든 잼버리 부지가 사상누각(沙上樓閣)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간척지라는 이유로 새만금 잼버리의 모델로 삼았던 일본 야마구치현 카라라하마 잼버리 부지와는 차원이 달랐다. 카라라하마 간척지는 50여 년 전에 매립이 된 곳이다.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면서 배수, 전기, 상하수도, 기념관과 실내외 체육시설 등 기본인프라가 갖춰져 있었다. 그래서 다수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새만금은 8월 3일 하루에만 벌레 물림 환자와 온열 환자가 521명이나

발생했다. 같은 간척지라는 조건 예산을 3배나 더 쓰고도 중도에 대회를 멈춰야 했던 것도 이 같은 조건 차이 때문이다. 어쩌면 잼버리 파국의 첫 번째 패착은 일본 야마구치현 키라라하마 간척지와 새만금 갯벌 간척지의 조건이 같다고 보고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림 4] 제23회 일본 대회 부지 전경



전라북도와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몰랐을까. 2016년 새만금개발청과 2017년 전라북도가 발주한 보고서는 모두 부지 조건에 따른 폭염과 폭우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2020년 공사가 본격화하자 환경단체는 2017년 준공한 계화도 앞 농생명 용지, 야영장으로 당장 이용할 수 있는 200만㎡ 넓이의 신시도~야미도 구간 관광레저 용지, 혹은 새만금 상부의 자연 상태 노출지에서 대회를 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 남은 갯벌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달라고 여성가족부에 공문을 보내고, 세계 스카우트 연맹 총재에게 호소문을 보냈다.

이처럼 다른 부지로 옮길 수 있었는데도 전라북도는 왜 문제의 해창갯벌 일대를 잼버리 부지로 고집했을까. 유치 추진 당시, 새만금 사업은 최악이었다. 중동의 두바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만들겠다는 화려한 조감도의 이면은 어둡고 초라했다. 담수호의 물은 썩고, 물고기는 폐죽음하고, 노출지에는 먼지만 날렸다.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확정했지만, 개발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삼성의 7조 6천억 원 신 재생에너지 사업도 물 건너갔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잼버리 유치는 한계에 직면한 새만금의 활로 찾기였다. 전북 도는 세계잼버리를 유치로 전북과 새만금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속셈은 따로 있었다.

첫째, 새만금 공공 매립을 확대하고 기반 시설 조기 건설을 통해 개발 속도를 높여 보자는 것이었다. 전라북도는 최종 잼버리 개최지로 결정이 되자마자 새만금 SOC 등 기반 시설 조기 구축을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을 통해 6조 4,656억 원의 생산과 2조 855억 원의 부가가치 발생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새만금 사업은 지역 낙후와 소외 여론을 잠재우는 효과적인 통치 수단이었다.

▶ 인문·사회환경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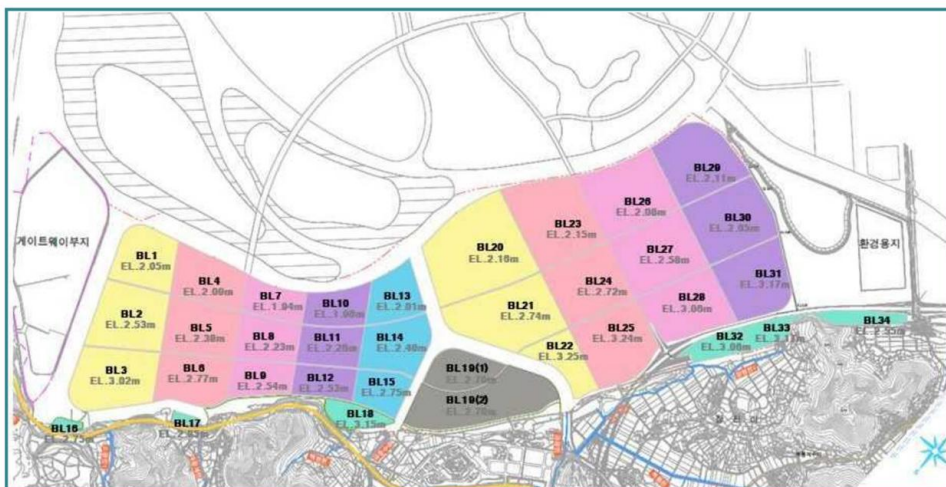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민간기업 등 총 **19개의 새만금 내 사업**이 추진중
 - 개발사업 위주의 새만금 사업 중 **생태계 보전가치 향상을 위한 환경생태용지(2-1단계) 사업의 중요성** 대두



2018년 11월 '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행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새만금 SOC 사업도 탄력이 붙었다. 도는 새만금 신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조기 착공, 동서 2축, 남북 2축 도로 개통, 새만금 신항만, 수변도시 공공 매립 추진 등 새만금 내 19개 사업 추진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 시기 정부의 예산 투자가 대폭 늘었다. 국제행사를 지렛대 삼아 관련 SOC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국제행사를 빌미로 타당성이 낮은 토목공사를 벌려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문제다.

둘째, 변산반도와 가까운 관광레저 용지의 공공 매립을 앞당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하지만, 새만금 수변도시 공공주도 매립이 비슷한 시기에 결정되면서 잼버리 부지 매립은 농지관리기금을 쓰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법은 기금의 사용처를 엄격하게 정해놨다. 야영장 조성 사업을 조직위와 전라북도에 넘긴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잼버리 부지의 평균 매립 지반고는 1공구 2.59m, 2공구 2.28m로 일반적으로 지반고 1.15m 이하인 농업 용지보다 높다. 하지만, 인근 수변도시 용지 지반고인 2.65m보다는 낮다. 관광레저 용지로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블록계획고 평면도



환경단체는 농지기금을 편법으로 사용해 농지조성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한 농촌공사 사장과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과연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지 의문이다.

셋째, 잼버리 부지 매립 면적도 당초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늘렸다. 2016년 새만금개발청의 '2023 세계잼버리 유치 실천방안 연구 용역'에 의하면 숙영지, 전시장, 대집회장 등을 위한 매립 필요 면적을 약 389ha로 계산했다. 그런데, 2017년 12월 새만금위원회가 임시 농지로 변경한 후 설계 단계에서 매립 면적이 884ha로 늘어났다. 예산도 그만큼 늘고 공사 기간도 길어졌을 것이다. 2019년에야 세부설계와 총사업비 반영이 마무리되었고, 실제 첫 삽을 뜬 것은 2020년 봄, 잼버리를 불과 3년 반 남겨둔 시점이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얻으려 한 결과, 정상 개최를 위한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항건 한번 안 둘러보고 매듭 한번 배워본 적 없는 정치인들이 새만금 사업 매립 속도전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한 결과, 꼬인 매듭이 더 엉켰다. 더는 전북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국책사업에 맞게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냉철한 평가와 성찰을 통해서 전북은 물론 한국 사회의 미래 가치를 담은 대안의 새만금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갯벌이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으로 주목받고 있다. 식량 증산 목적이던 간척사업은 지나간 시절의 낡은 유산이다. 태풍 해일 등 기후재난 완화, 기수역 산란지 복원으로 수산업 회복, 부가가치가 높은 생태관광 활성화, 갯벌과 염습지 복원으로 흡수원 기능 인정 등 갯벌이 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2017년부터 연안습지 온실가스 흡수 및 배출량을 관리해온 해수부는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단위면적(km^2)당 198t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내 갯벌 2천447 km^2 로 계산하면 매년 48만4천500t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셈이다. 2021년 서울대 연구팀과 함께 갯벌의 탄소흡수 역할 및 기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미국과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이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승용차 11만대가 내뿜는 수준인 26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의 갯벌은 2009년 지정된 유럽 바덴해에 이어 2021년 7월, 갯벌로는 두 번째로 세계자연유산에 지정이 되었다.

책임 공방도 뜨겁다. 관련법과 업무 분장, 예산 집행으로 볼 때, 중앙정부와 조직위원회 책임이 가장 크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책임져야 할 대상이다. 감사원 감사든 국정감사든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이 처참한 실패로 끝났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라북도의 책임도 매우 크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북도가 세계잼버리를 만병통치약처럼 팔았다는 것을. 나무가 자라는 화려한 조감도와 7조 원 규모의 과도한 기대 효과, 새만금 국제공항과 KTX, 신항만 앞에는 늘 잼버리가 붙어다녔다. 반면 미래세대, 국제사회와 약속은 소홀했다.

따라서, ‘전북이 외려 피해자다’ ‘과도한 언론의 물어뜯기다’ ‘새만금 SOC 흔드는 정치 공세’라는 방어적인 태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넘어간디’를 외치며 뚝뚝 뭉치자는 여론몰이와 편 가르기가 우려된다. 왜곡된 전라북도 지키기가 낡은 새만금 사업과 지역 정치권 지키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리더의 진정한 용기다. 마지막 남은 수라 갯벌을 훼손하고,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놓고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렇게 무리한 주장은 아니지 않는가.

현재, 하루 두 번 이뤄지는 ‘해수 유통 물 관리’를 공식 선언하고,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소 건설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바닷물이 더 많이 들고 나면 갯벌 생태계가 회복되고 수산업도 살아난다. 매립 면적을 줄여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RE100 산업단지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구성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8월 6일, 스카우트 대원들이 폭염과 사투를 벌이며 우정과 환대로 교류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바로 옆 옛 해창 갯벌에서 바닷물이 들고나는 새만금을 꿈꾸며 장승 6기를 세우고 만장을 내 걸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K-팝에 춤추고 노래 부를 때, 우리도 농악대 따라 어깨춤을 추고, 갯벌 버스킹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해창 갯벌이 다시 바다를 만나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잼버리가 끝나고 공항 대신 갯벌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02

전북노동브리프



리뷰

-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조사연구」
-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노동환경 실태조사」
- 의견 분분한 '포괄임금제' 대체 뭐길래?



전북노동브리프 Jeonbuk Labor Brief_____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조사연구

－ 거래네트워크 특성을 중심으로」*

조용화(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지난 2022년,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의 수탁을 받아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조사연구 -거래네트워크 특성을 중심으로〉를 수행했다. 전북 지역의 자동차 산업이 분명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는 진단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못한 채 현장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 연구는 산업전환에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전라북도 자동차 산업의 향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수행되었다.

* 이 글은 전북노동정책연구원에서 2022년 수행한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조사 - 거래네트워크를 중심으로〉의 리뷰글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제조해 완성차업체에 공급하는 자동차부품산업의 범위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에서 완성차 업체를 제외하고 C30 이외의 제조업 중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 조형제 등(2021)의 방법을 따라 조사를 진행했으며, 자동차 부품산업을 차체, 사시(조향, 현가, 제동, 공조), 전장부품, 의장부품, 기타 연관산업으로 분류했다는 점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전라북도내 국내 중대형 상용차(트럭, 버스) 생산량의 95%를 생산하는 명실상부 상용차 생산의 거점이다. 2017년 이전까지 자동차 산업은 전라북도의 생산과 수출의 중심에 놓여있었으나, 한국 GM 군산공장의 폐쇄와 국내외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중대형상용차 산업의 장기적 하락국면 돌입은 전북 자동차 산업을 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전환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중대형 상용차 산업은 다른 자동차 산업에 비해 탄소배출 부담이 크다는 구조적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또한 전라북도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속성 및 계층성은 납품처가 1곳에 불과한 부품업체 비율이 35.5%에 달할 정도로 전체 부품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완성차 업체의 경영과 차종 전환에 부품사가 받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부품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또한 사실상 원청 업체와의 납품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산업 구조에서 산업전환에 맞춰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거래 네트워크 현황과 특성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 연구는 전북 지역의 자동차 산업전환에 따른 향후 산업 전망 및 영향(특히 부품사)을 정리했다. 자동차 산업전환 및 부품산업 관련 선행 연구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세부 통계를 분석했고, 지역별 고용조사·전국사업체조사·광제조업조사·전라북도 제조업편람과 한국평가데이터(CRETOP)의 기업데이터, 금융감독원(DART) 공시자료 등을 종합해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사업체 리스트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구축한 사업체 리스트를 한국평가데이터(KED)의 기업 거래정보를 활용해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기업의 거래 단계를 구분하고 특성 등을 비교·분석했다. 한편 최대한 상세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자료의 한계 등으로 미진한 부분은 심층면접을 통해 보완했다.

이 글에서는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 연구의 핵심 결론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 및 과제를 간략히 점검하고, 동시에 지난 여름호의 ‘지역노동시장의

충격흡수과정의 사례연구-군산지역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최창곤) 리뷰에 이어 군산 지역노동시장의 충격이 전북 자동차 산업에 미친 영향을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표 1〉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 연구 자동차 부품사 리스트 구축 방법

1차 리스트	2차 리스트	최종 리스트
KAICA 회원사 리스트 전라북도 제조업 편람 상 C30 사업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타타대우상용차 군산공장 거래업체	1차 리스트 + 한국평가데이터 사업체DB 1차 리스트와 거래관계가 있는 전라북도 소재 사업체 선도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라북도 소재 사업체	2차 리스트 -'22.6 기준 휴·폐업 사업체 -각종 도·소매업 -렌탈 -전기, 가스, 통신 -주유, 자동차정비 -요·급식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건설업

2.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사업체들의 만성화된 위기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결국 완성차 업체로 모이는, 강한 의존성과 전속성을 가진 거래 특성을 가졌다는 점을 보고한다. 완성차 업체는 거대한 자본과 그를 바탕으로 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부품업체에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이러한 수직계열화는 전속거래에 기반한 하도급거래를 바탕으로 완성차 업체의 높은 영업이익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부품사의 수익성을 낮추고 혁신을 저해한다. 이는 자동차 산업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이 거래단계별로 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전라북도의 자동차 산업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이곳의 특징적인 내용으로 부품산업적 기반과 생산 품목이 취약하다는 점(김현철·박의성, 2018), 전라북도에 집중된 상용차 완성차 업체의 경영부진으로 경영지표 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채준호·이지연·고재훈, 2019)을 지목하고 있다.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 연구에서 짚어낸 전북 부품산업 현황도 이러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선 양적인 하락세가 눈에 띈다. 2017년 이후 전북의 완성차 생산 및 수출은 확연히 감소했으며(생산대수 2017년 101,293대→2021년 46,012대, 수출액 2017년 905,935천달러→499,041천달러; 각각 54.6%, 44.9% 감소) 이는 한국GM 자동차의 군산 사업 철수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 같은 시기 상용차 생산도 크게 감소해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시기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 생산은 횡보하는 가운데 수출은 2012년 대비 2021년에 83.5% 감소하는 등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북에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수도 통계에 따라 2016년 이후 10~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 수는 10% 이상 증가했고,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가 크게 감소해 사업체 규모가 영세해지는 가운데 비정규직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서 구축한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리스트와 기업경영 자료를 기반으로 살펴본 부품사들의 사업체 특성과 수익성, 안전성, 성장성을 보면 위기 상황은 더 선명하다. 2022년 6월 기준 자동차 부품산업 사업체는 총 725개(본사 타지 소재 업체 17개)에 17,190명(전북 이외 지역 소재 사업체 제외)이 종사하는데, 평균 사업체 규모는 25.1명으로 30인에 미달해 전체적으로 영세했다. 영세 사업체는 사업체 규모 자료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 부품산업의 영세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표 2〉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거래단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규모

(단위:개, 명, 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평균 사업체 규모	평균 업력
1차 업체	112	7,323	65.38	20.66
2차 업체	244	5,350	21.93	12.62
3차 이상 업체	76	1,393	18.33	11.46
거래정보 미비	293	4,116	14.05	9.06
계	725	18,182	25.08	12.31

또한 이들 사업체의 수익성, 안전성, 성장성은 모두 불안정하다. 이들 업체의 거래단

계별 종사자수, 사업체 규모, 평균 업력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거래단계에 반비례해 아래로 갈수록 수치가 줄어든다. 부품산업의 총매출액과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모두 GM 폐쇄가 있던 2018년을 기점으로 떨어지는데, 거래단계별로는 2차 밴더 이하 업체, 규모별로는 30인 이상(중규모) 사업체의 매출액 감소가 뚜렷해 규모별 분절과 거래단계별 분절이 동시에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분석 기간의 전라북도 자동차부품산업 총 영업이익률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1.8%~3.3% 수준에 불과하고, 평균 부채비율은 산업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30인 미만 사업체의 부채비율이 3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꽤 높은 가운데 122개 사업체는 부채비율이 400%를 넘기도 했으며, 5년 내내 만성적 위기상태인 사업체가 19개였고, 전체 종사자 중 21.7%(3,572명)는 위기 기업에 재직 중이었다. 고정자본 투자가 감소한 사업체도 전체 중 절반이 넘었다. 자료의 한계로 수치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 전반의 노동조건 악화와 위기 대응 능력의 약화도 명확하다.

기후위기와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전지구적 목표 앞에서 자동차 산업전환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으며,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와 강한 의존성·전속성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은 완성차사의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산업전환에도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완성차 업체의 로드맵은 산업전환, 특히 중대형상용차 부문에 있어 불분명한 상태이며,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 비해서도 10년 이상 뒤쳐져 있다. 게다가 앞서 연구내용에서 살핀 것처럼 전라북도의 부품사들은 타 시도에 비해 의존성과 전속성이 더 강하고 경영 지표도 열악하다. 중대형상용차의 산업전환 대책 부재와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전환은 전북의 자동차 부품사들에게 이미 재난이 되어 눈앞에 놓여있다.

3.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징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 연구에서는 타 시도와 다른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징적인 부분을 짚어내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1차 밴더 업체와 그 이하 밴더 업체 사이의 뚜렷한 위계성과 계층성이 있으며, 하위 밴더로 갈수록 경영지표가 열악해지는 구조가 있다는 점을 보고한다. 그런데 전북의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격차를 살핀 채준호·이지연·고재훈(2019)도 지적인 부분이지만, 전라북도에서는 1차 밴더 업체의 경영지표가 2차 밴더 업체보다 열악한, 특이한 지점이 관찰된다. 1차 업체는 2차 이하 업체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낮고, 자산 감소 사업체 비중이 높고, 유형자산 규모가 감소한 사업체 비중이 높으며, 자기자본비율도 낮았다.

연구는 이러한 통상적 보고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의 요인으로 두 가지 사항을 짚는다. 첫째, 전북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거래단계가 짧고 강력한 전속 관계가 1차 업체 까지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대형 상용차 산업이 긴 부진의 늪에 빠지자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2차 이하 밴더 업체들은 전속 관계 유지를 포기하고 다른 거래처를 찾거나 폐업하는 등 다른 선택을 하는 게 가능했다. 이는 심층면접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인데, 완성차 업체와 2차 이하 업체 양쪽에서 수익성이 나지 않는 부품 생산을 포기하자 1차 업체의 전속관계가 심화되고 마진률이 낮은 생산량을 떠맡아 생산 부품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둘째, 1차 업체 중 한국GM으로 납품하는 업체의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이 경우 한국GM과 종속 관계에 있던 2차 이하 업체는 폐업했거나 전속관계를 옮겨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심층면접에서도 2차 이하 밴더들이 전속 관계 유지를 포기하거나 폐업하거나 새로운 납품처를 찾아 판로를 다각화하려는 등 ‘다른’ 선택들을 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모든 선택은 쉽지 않다.

또한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은 작은 사업장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30인 미만 사업체가 그보다 규모가 큰 사업체에 비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와 연결된다. 심층면접에서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 후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출, 조립, 어셈블리 이정도 기업만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과 인건비를 조정하는 전북의 자동차 부품사에 대한 언급이 있다. 즉, 전북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기술보다는 노동집약적이고,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어려워 이윤을 내기 위해 사업체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그러나 작은 사업장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전환에는 연구개발 등 대응 능력의 부족으로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전북에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없는 사업체가 절반을 초과한다.

4. 난항,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결국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에 더해 산업전환과 중대형 상용차 로드맵 부재·경영지표의 열악함·거래단계의 축소와 전속성 약화·규모 축소로 요약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은 앞서 살폈듯이 자동차 부품사 차원에서는 돌파구를 찾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GM 군산공장의 철수 이후 많은 자동차 부품사들이 다른 선도기업을 찾거나 아예 자동차 부품이 아닌 다른 생산품을 찾는 등 생존의 길을 모색해왔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영업이익률을 높이고 버티려는 방안일 뿐 산업전환과 미래차 등 닥쳐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었다. 인터뷰에서는 대부분 선도기업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거나, 생산부품이 내연차와 전기차 양쪽 모두에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전환 대비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연구개발에 손대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는 기술이 있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생산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한

사항에 가깝다.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 연구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제언한다. 첫째, 중대형상용차 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위기 가운데 적극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지방정부는 부품기업의 전동화 차량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노동조합 역시 이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은 정부·지방정부의 환경·노동규제 강화와 보다 견고한 중대형상용차 탄소중립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넷째,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정기 통계조사와 부품기업과의 소통 통로 확보가 필요하다.

전라북도가 2021년부터 운영한 「전라북도 상용차산업 노사정협의회」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운영되었으나 현대자동차 사측의 불참을 이유로 결국 운영이 잠정 중단되었다. 원·하청 노동조합과 정부·지방정부, 원청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강제성 있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산업전환에 독자적인 대응이 어려운 원·하청 노동자와 부품 기업이 기초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살폈듯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은 그 영세성으로 인해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사업체가 적으며, 정부·지방정부의 개입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개별 기업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라이선스 공유와 같은 사회적 모델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뒤쳐진 산업전환 로드맵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유지시키기 위해 위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환은 현실이며, 속도도 빠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도심을 통과하는 내연기관 중대형상용차량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조기 대·폐차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한편 볼보가 출시한 자사 중대형 전기트럭(1회 주행가능거리 300km)에 대해 유럽의 화물노동자 법정 휴식시간 동안 보충충전을 한다면 하루 5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처럼, 화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중대형상용차 산업전환 사이의 연결고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요구할 필

요도 있다.

산업전환과 직면한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자동차 부품사에 대한 이렇다 할 기초통계조차 부재한 상황은 정책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문제가 있다. 전북노동정책연구원에서 시도한 이 연구는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제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예산 및 정보접근의 문제로 주요 시계열 통계자료를 수집해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동시에 심층면접에서 부품사들은 지원정책을 접할 경로가 없다고 호소하는데, 정책을 연구하고 기업들에게 연결되기 위한 사업을 전라북도가 시행해야 한다.

「전라북도 상용차산업 노사정협의회」 중단 이후 민주노동전북본부는 2022년 5월 지방자치선거 정책의제로 상용차산업 노(사)정 협의체 운영을 제시한 이래 주력산업 협의체의 운영 필요성을 도에 꾸준히 전달해왔다. 2023년 9월 마침내 노사정 협의를 통한 지원방안과 건의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금속노조전북지부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전환이 전라북도의 자동차 부품사들에게, 나아가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재난이 되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공동 대응체계가 작동하고 대응 정책들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현철·박의성. (2018). 전북지역 자동차산업 현황과 대응 전략. 한국은행.
- 조형제·배병찬·강아름·김철식·박정규·문상식·이지현. (2021).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 및 전환지도 작성 연구. 울산일자리재단.
- 채준호·이지연·고재훈. (2019). 전라북도 상용차산업 현황과 원·하청 관계연구. 전북노동정책연구원.

환경 기준 초과, 그러나 안전보건 기준에는 미달?*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부쳐

강문식(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이하 리사이클링타운)은 전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리사이클링타운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설립되어 2016년부터 가동 중이며 음식물 폐기물(300톤/일), 하수슬러지(150톤/일), 재활용품 폐기물(60톤/일)을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으레 그러듯, 리사이클링타운에서도 악취, 소음, 분진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시설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줄기차게 이어졌다. 올해 발간된 환경상영향조사 보고서에서는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시설 협약 기준을 최고 4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호소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음을 보여줬다. 시설에서 수백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렇게 악취, 소음, 분진 피해를 호소한다면 종일 그 시설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어떨까? 리사이클링타운 노동조건 실태조사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다.

* 본 원고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관지 「일터」 2023년 9월호 특집으로 게재된 글입니다.

2.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의 심각한 건강 수준

조사 결과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체 임금노동자나 타 폐기물 처리시설 노동자와 노동환경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임금노동자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폐기물 처리 시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열악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주관적 건강 조사에서 노동자들의 평균 점수는 3.1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3.7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노출 시간은 모든 항목에서 전체 임금노동자에 비해 1.7~3.7배 길었다. 두통, 눈의 피로의 건강 문제는 전체 임금노동자에 비해 7배 높은 비율로 경험했고, 전신피로도 4.1배 높은 비율로 겪었다. 피부 문제, 청력 문제는 각각 70.7배, 35.5배 더 높은 비율로 경험했다.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상위 25% 이내에 해당했고, 전체 임금노동자에 비해 우울증상은 2.2배, 수면장애는 3.4배 경험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면접조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노동자들은 작업 환경이 열악하며,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안과 우울 등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건강상 문제는 다양한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노동환경, 높은 노동강도, 교대작업, 미흡한 노동자 보호 및 지지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노동자들의 불안, 그러나 충족되지 않는 알권리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유해가스가 자신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염려한다. 준공된 지 5년도 지나기 전에 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부식성 가스가 시설의 천정을 부식시켜 천정을 모두 교체했을 정도다. 시설에 설치된 에어컨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매년 고장 나 교체를 반복한다. 방수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 고장 나 서비스센터를 찾았더니 기판이 부식되었다는 설명을 듣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가스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며 보호 대책을 강구 할 따름이다.

다양한 유해인자가 존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작업환경측정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측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측정에서는 단 한 번도 기준을 초과했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없고, 무엇을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험성 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해당 작업의 노동자를 평가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하지만 정작 리싸이클링타운의 위험성 평가는 모두 관리자들만 참여했고 노동자들은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도 알지 못했다. 노동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되어야 할 평가 결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도 제공하지 않다가 기초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쳐서야 가까스로 받아볼 수 있었다.

4. 주민 피해가 강조될수록 지워지는 노동자의 권리

애초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발생지 시민의 시야에서 감춰지기 마련인데(리싸이클링타운도 인적이 드문 숲 한가운데 지어졌다), 그나마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의 생활·건강상의 피해는 때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곤 해왔다. 법에서도 3년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했고 주요 지자체들은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의 생활·건강상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 되는데 비해,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오히려 사회적 시야에서 감춰지고 있다.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은 회사가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시설의 문을 닫아두고, 배기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우선 악취나 먼지가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되니까 셔터를 다 내리라고 해요”, “민원이 생긴다고 셔터를 닫으라고 그래요. 그 셔터를 닫으면은 우리는 죽으라는 거예요. 막말로.”, “민원이 발생하니 셔터를 내려라. 문 다 닫아라. 직원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배기 팬은 거의 다 안 쓴다고 보시면 쉽게 될 것 같아요. 그 배기 팬이 돌면 그 악취가 그대로 외부로 나가는 되는 거기 때문에” ...

노동환경에 대한 회사의 태도가 무관심이 아닌 의도적인 무시일 수 있겠다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비가시화는 대개 지하화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리싸이클링타운도 가장 악취가 심한 설비인 슬러지 저류조·저장조 등이 지하에 위치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야에서 감춘다고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인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해인자들은 바깥과 차단된 채 지하에 머물고 농도가 짙어져 그 공간 내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20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작년 6월 평택에코센터 폭발 재해다. 회사가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실태를 바깥으로 드러내거나, 이를 원천 저감하도록 설비 개선에 투자를 해야 한다. 회사는 어느 쪽도 선택하고 싶지 않다.

5.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는 경합하지 않는다

회사가 은폐와 고립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작업장 노출 기준이 환경 기

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맹점이 있다. 리싸이클링타운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악취물질 농도는 환경 기준을 초과했지만, 정작 각종 악취물질, 분진이 모여 있는 시설 내부에서 측정한 유해 물질 농도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게다가 환경 기준에서 정한 지정악취물질 중에는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이 대다수이고, 여러 선행연구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다이옥신,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도 측정 대상 인자에서 누락 되어 있다. 회사가 노동환경 개선을 포기한 채 환경 기준만을 충족하는 길을 선택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은폐된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가될 뿐이다.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은 주야 맞교대 노동을 하며 하루 12시간 이상 악취와 분진에 시달리다 두통, 눈질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을 겪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 적응해서 괜찮아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는 경합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노동안전보건 의제보다 환경보건 의제의 수용성이 높은 편이다. 가슴기살균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가운데 노동자의 피해는 그다지 주목받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문제가 불거져 제품 생산이 중단된 지 5년이 지나서야 가슴기살균제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일부를 찾아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참여자들은 호흡기 증상을 경험했고 이 증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얼마 전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조사 결과 마을 인근에 있던 비료공장이 발암물질의 진원지로 지목되었다. 그래도 이번에는 보건당국이 문제 발생 초기에 비료공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노동자들을 찾아 역학조사를 시행했다. 마을을 떠난 노동자들도 암 투병 중이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되었다면 이 사건들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노동자가 안전하면 시민도 안전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쉽게 간과하는 진실이다. 리싸이클링타운도 마찬가지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작업장 노출 기준에 환경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퇴근 후 가족들을 안아 주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소박한 소망마저 외면한 채 이들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로 유지되는 도시는 그 자체로 부정적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도외시키는 회사가 시설의 공적 성격을 존중할 리도 없다. 회사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협약에 정하지 않은 음식물 폐수를 외부에서 반입해 악취 피해와 시설 노후화를 부추기기도 했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이를 지하로, 숲속으로 숨기려 들 게 아니라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지자체의 관여가 절대적이다. 폐기물 처리시설 안전보건 기준의 강화는 지역 주민들의 행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 본문에 별도 인용표기를 하지 않았으나 본 글을 작성하는데 주요하게 참고한 문헌을 아래에 기재하여 놓는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바란다.

- 강영중 외. (2018). 가습기 살균제 제조 공정 근로자 건강영향 조사. 한국환경보건학회지, 44(5).
- 김세훈 외. (2021). 환경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장점마을 백서제작 최종보고서. 익산시.
- 남우근 외. (2022).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박철용 외. (2021). 폐기물 소각장 근로자의 유해요인과 건강영향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의견 분분한 ‘포괄임금제’ 대체 뭐길래?

김음표 (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근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 계약을 맺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를 통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받은, 즉 ‘예외법리제도’에 해당한다. 법상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실태조사¹⁾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2,522곳 가운데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사업체가 37.7%에 이르며, 사무관리직의 경우 이 비중이 79.6%에 달한다고 한다. 사실상 국내기업 3곳 중 1곳이 운용할 만큼 보편화 된 것이다. 노동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사업주 편의상 ‘통쳐서’ 지급하는 방식인 포괄임금제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더 일하고 덜 받는’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일까?

1) ‘2020포괄임금제 실태조사 보고서’ 고용노동부

1. 포괄임금제 의의

-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원칙을 따르지 않는 예외적인 제도

포괄임금제란 ①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으로 정하거나, ②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을 말한다.²⁾ 즉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을 함께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계약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급 280만원에 시간외 수당을 모두 포함하기로 한다면, 월급 2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0만원은 기본급, 80만원은 시간외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하거나, 연봉에 15일의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등이 전형적인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계산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대법원 1997.4.25. 선고 95다4056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 외 근로’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판례 역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통상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한 노동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각 수당등의 법정수당을 「사후에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임을 강조하였다.³⁾ 또한 대법원은 2010년경부터 그 동안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온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규제를 가함으로써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및 유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는 새로운 판례 법리를 정립하였다.⁴⁾

3.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사업장에 약정되어 있는 포괄임금제의 효력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선행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의 존부, 즉 해당 약정이 과연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 판단되어야 한다. 애당초 포괄임금제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유효성은 따질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대판 2020.2.6. 2015다233579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그리고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임금산정의 단위>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되는데, 앞서 설명과 같이 포괄임금제는 i) (정액급) 기본임금과 수당이 구분되지 않는 형태와 ii) (정액수당) 기본임금

3) 대판2008다57852

4) 판례해설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및 유효성 판단기준’ (김도형, 법률신문 2017.06.28.)

과 수당 총액은 구분되나 개별수당 간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형태, 단 두 가지의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임금 외 법정 수당을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각 개별수당이 구분되는 경우라면, 이는 포괄임금제 임금산정의 단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 OT계약’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을 살펴보면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대부분이 실체는 ‘고정OT약정’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처럼 ‘고정OT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 하여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다. 그리고 이는 ‘임금체불’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또한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이를 인정할만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관행 등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이러한 법적근거 없이 i) 단지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ii)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 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선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⁵⁾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묵시적으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6년 판결⁶⁾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

5) 2012.3.29. 선고 2010다91046, 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다5098,5105

6)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1060

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②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할 것을 들어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였다.

4.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이 인정되었다면, 해당 약정의 유효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대법원은 2010년 판례⁷⁾는 포괄임금약정의 두 가지 유효요건을 판시하였는데, i)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며 ii)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인정될 때에 유효하다 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이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결은 아직 없으나, 해당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예시로 <감

7)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시단속적 근로 등>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후자의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또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하다. 실제로 대법원은 노인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노동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여 이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로 판단하기도 하였다.⁸⁾

5. 포괄임금제가 낳은 문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 ‘장시간 무료노동의 늪 : 포괄임금제 보고서’⁹⁾에 따르면, 수많은 직장인이 포괄임금제로 인해 공짜 노동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직장갑질119에 고충을 호소한다. 가장 큰 고충은 바로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이다. 이러한 포괄임금제 악용구조는 흔히 ‘자유이용권’에 비유되는데,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심준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 구성항목에서 연장근로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규정하는 것”이라며 “무제한 이용권을 받는 것처럼 연장근로 한도 최대한까지 장시간 노동을 지시하게 되고, (최대 주52시간인)한도를 넘기면서 지시하는 때도 잦다.”고 했다.

너무도 당연하게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 바로 엇그제 포괄임금제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는 2016~2018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아와 얼핏 보면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8)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9) 장시간 무료노동의 늪 포괄임금제 갑질 보고서 (직장갑질119,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2022.11.)

보였으나, 실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더불어 임신 노동자의 모성도 위협받는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에서의 임금을 삭감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은 오남용이 판친다. 근로시간 미관리 혹은 편법운영이 마치 당연시되어 공짜 야근과 장시간 노동의 주범이 되었고, 심지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까지도 모두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공인노무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만으로 일을 더 시키면 당연히 더 해야 하고, 법정근로시간 이상 일해도 초과수당이 없다는 것이 노동현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노사의 반응은 뚜렷하게 다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포괄임금이 필연적으로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포괄임금이 경직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보완하고,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를 둘러싼 소모적인 노사 갈등을 예방하는 장치로 활용되는 순기능이 있다고 했다. 반대로 노동계 관계자는 “연장 근로가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는 포괄임금이 주로 저임금 계층의 ‘수당 후려치기’에 악용되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사업장의 무분별한 포괄임금, 아니 포괄노예제도를 관리 감독할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 나가며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원칙’이 있음에도 이를 거스르는 포괄임금제이다. 법조차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탓에 대법원의 입장조차 명확하지 않다. 각 쟁점 발생 시마다 전후 사정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니 하급심들은 이리저리 휘둘린다. 어떠한

법상 요건도, 대상 범위, 기준도 없는 이 제도로 인하여 직장인 3명 중 1명이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¹⁰⁾ 세계 최고의 IT강국 한국은 출퇴근과 업무, 휴식시간을 초 단위로 측정 가능하다. 따라서 애초에 포괄임금제 같은 게 들어설 여지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기업은 포괄임금제를 점차 늘려 수당을 착취해 왔다. 노동의 대가는 정당해야 한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10) 직장갑질119 온라인 설문조사 (엠브레인퍼블릭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pm 3.1\%$ 포인트)

03

전북노동브리프



칼럼

- 전북교육청 돌봄전담사 정신적 스트레스 산업재해 사건
- 2023년 군산, 비극을 멈춰야 한다



전북노동브리프 Jeonbuk Labor Brief_____

전북교육청 돌봄전담사 정신적 스트레스 산업재해 사건

박영민(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1. 보호받아야 할 교원의 인권

교권이란 말은 너무나 자주 많이 쓰이지만 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합의되지 않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같은 문구가 들어 있지만 교권이 무엇인지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 교권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되지 않은 까닭에 막연하게 '교사를 위한 것', '교사의 지위나 권익 등 무언가'를 가리키며 학생 인권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교권의 개념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우월성에 초점을 맞추며 교사의 권리나 권위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의 인권, 즉 교사가 폭력을 당한다거나 부당한 압력을 받거나 과중한 노동을 강요받는 등 교사의 인권이나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한 사례에서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교사의 인권, 교사의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이다.

2. 전라북도 교육청 소속 돌봄 전담사의 이야기

최근 뉴스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끝내 세상을 등진 교사들의 유족과 동료들 잃은 또 다른 교사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이초 교사 사망,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원의 극단적 선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원의 인권 보호 중요성과 정책 보완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도 벼랑 끝에 선 교사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재해자는 2017년경부터 전라북도 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로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해오고 있었다. 2021년 경 피해자가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거짓 신고와 해당 학부모의 협박과 학교인권센터, 경찰 및 검찰,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무고한 신고 등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담을 진행한 사건이다.

최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므로 다른 상담과 다르게 신증을 기하여 수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각종 증거자료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재해자가 무고하게 거짓신고와 무고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혹여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생 및 학부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증에 신증을 기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학부모는 재해자가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거짓신고와 해당 학교에 협박과 경찰, 검찰, 각종 행정기관에 무고하게 신고하였으나, 종국적으로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4차례의 조사결과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피해자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권 행사로서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고, 행정기관에서 경찰서로 이첩한 조사 경위를 확인해 보니 객관적인 조사조차 개시하지 않고 신고 접수를 받은 다음 날 즉시 수사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전라북도 경찰청 역시 객관적인 조사도

없이 재해자를 검찰로 송치결정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전주지방검찰청은 수개월 동안 조사결과 피해자의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님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며 재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동안 해당 학부모는 지속된 민원과 불만을 제기하며 재해자에 대하여 퇴직을 종용하고 징벌적 배치전환을 요구하며 돌봄전담사를 해고하라고 학교측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재해자는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갈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무고함이 밝혀지기 전까지 여러 학부모들과 주변으로부터 학생에 대한 가해자라는 헛소문과 비웃음에 고통스럽고 학생만을 바라보며 교육자로 살아왔던 삶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

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자의 연령, 상병치료 경위 및 경과, 과거 병력,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임상심리평가결과,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일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의 상병이 소속 사업장에서 학부모로부터 무고한 신고 및 부당한 대우 등 스트레스로 인하여 받은 상병에 해당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21년 경 학부모의 계속되는 민원과 관할 경찰조사 행정기관 등의 조사를 시작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과 괴롭힘, 경찰수사와 타 학교로의 전근 등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종국적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때까지 내부감사와 경찰, 검찰 조사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판단하였으며, 내부감사 및 외부의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압박, 우울감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재해자의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건이다.

3. 결 론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부의 비현실적인 정책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간섭, 학생들의 무관심과 성향의 변화로 교사에 대하여 무고하게 신고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교권이 무너지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

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에 있으나, 이와 동시에 교사들의 교육권 또한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업무상 요인에 의한 정신질환이 산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산재인정에 대한 문턱이 높고 불승인이 높은 편이다. 더군다나 최근 다수의 교원들의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인하여 교원의 인권이 문제되기 전까지 교원의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를 인정하는 것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 번아웃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사회·국가적 지원과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2023년 군산, 비극을 멈춰야 한다

황선호(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1. 2023년 군산 중대재해 리스트

재해 발생일	재해 내용
3월 2일	세아베스틸 연소탑 분진 화상 사망
3월 15일	아적장 덤프트럭 토사 압착 사망
3월 25일	건설현장 거푸집 추락 사망
7월 14일	단열재공장 탱크 질식 사망
7월 21일	도로공사현장 노면파쇄기 충돌·역과 사망
7월 26일	휴스틸 공장신축현장 온열질환 사망
7월 29일	사료저장시설 붕괴 사망
8월 16일	세아제강 방열판 폭발·추락 사망

2023년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리스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름만 존재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

행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하 군산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구조를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사망사고를 막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3월 2일 - 2명의 노동자가 뜨거운 분진에 덮였다.

2023년 3월 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용광로 냉각장치에 쌓인 고온의 철강 분진이 쏟아져 전기로 연소탑 분진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분진 제거 청소 작업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후 바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노동자 사망이 확인되고 난 후, 뒤늦게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나 사고가 발생한 연소탑 전체가 아니라 연소탑 ‘내부 청소 작업’에 국한하여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사고 바로 다음 날 연소탑은 다시 정상 가동됐다.

세아베스틸은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의 2022년 12월에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에서 적발된 기본적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재차 적발됐다.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특별감독의 결과 592건의 산안법 위반을 적발해 382건은 형사입건, 26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민주노총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아베스틸 산재 피해자 중 사망자 비율은 전국 평균(0.81%)의 15배가 넘는 12.5%다.

3. 3월 25일 - 건설노동자가 거푸집에서 떨어졌다.

군산시 금암동 아파트 건설 현장 형틀 목수였던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거푸집 설치 작업반장이었다. 지상 3층 슬래브 거푸집 상부에서 바닥 구조물 철근 상태를 확

인하던 중,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 1m 공간을 가로지르는 작업 발판 위에서 추락하여 약 2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망 당시 작업 발판은 고정돼 있지 않았고, 거푸집에 추락재해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건설사는 거푸집이 단절되는 부분과 개구부 등 노동자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가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급해야 하는데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노동자에게 교육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또한 거푸집 설치 시 단절되는 부분과 개구부에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거푸집 및 개구부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를 사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실시하지 않았다.

4. 7월 14일 - 공장 탱크에 노동자가 빠져서 질식했다.

군산시 오식도동 단열재 제조공장, 높이 2m, 지름 1.5m 원통형 탱크 안에는 단열재 접착제인 페놀수지가 들어있었다. 작동에 문제가 생기자 30대 노동자가 보수작업에 나섰다가 미끄러져 탱크 안으로 빠졌다. 동료 노동자의 기척이 없자 근처의 40대 노동자가 구조를 위해 탱크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탱크 안에서 화학물질에 질식하여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불과 20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 크기의 탱크는 내부가 산소결핍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에 농도측정기 사용을 권고하고 작업자가 빠져도 구조를 위해 들어가는 행동을 금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전에 노동자들에게 교육 실시해야 한다. 또한 밀폐 작업공간에서 작업자는 공기호흡기와 구명밧줄을 착용해야 한다. 탱크 안에서 작업할 때는 감시자나 안전관리자가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해자들은 방독마스크만 끼고 있었고, 감시자나 안전관리자가 옆에 대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탱크 추락시 안전

조치에 대해서도 교육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7월 21일 - 도로공사 현장에서 파쇄기에 깔렸다.

2023년 7월 21일 오전 8시 24분께 군산시 내초동 옥녀교차로 포트홀 포장 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 A씨(53세)가 라바콘(고깔)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 순간 노면파쇄기 -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된 노면을 평탄화시키기 위하여 절삭하는 장비 - 가 작업 구간으로 진입하였다. 노면파쇄기가 순간적으로 후진하였고 뒤에 서 있던 A씨를 들이받았고 깔고 지나갔다.

사업주는 노면파쇄기 같은 장비를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 노동자가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접근 금지 조치를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 노면파쇄기는 차량 너비가 넓어서 후진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2명 이상의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작업 시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을 미리 세우고 사고예방 대책도 수립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날 현장에 접근 금지 조치, 유도자도 없었고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7월 26일 - 휴스틸 공장 건설 현장에서 폭염으로 쓰러졌다.

휴스틸 군산공장 건설 현장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도급 계약을 한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 노동자가 쓰러졌다. 2023년 7월 26일 오전 10시 55분경, 오전임에도 이미 31도가 넘는 폭염에 노출돼 있었고, 태양광 패널은 햇볕을 받아 최대 90도까지 온도가 상승한 상태였다.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건물 지붕에 올라가 그늘도 없이 고온과 열기에 직접 노출된 노동자는 쓰러졌다.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한 열사병이 발생했고, 화상 외상과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켰다.

휴스틸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로서 고온 작업환경과 하절기 폭염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7. 8월 16일 - 세아제강 공장에서 밟고 서 있던 덮개가 폭발해 추락했다.

군산시 오식도동 세아제강 공장에서 파이프 건조 공정 덮개(상부 방열판)을 밟고 서서 철강 파이프 도금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 갑자기 덮개에 폭발이 발생하고 공중으로 떴다가 1m 아래로 추락했다. 덮개는 철판을 붙인 형태로 가로 8m에 달했다. 철강 파이프를 제작하는 공장이었고, 폭발한 증기관은 도금 작업 전 파이프를 건조하기 위하여 뜨거운 공기를 공급하는 설비였다. 사고 발생 1주 전부터 덮개를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중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같은 그룹사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3월에 연소탑 내부에서 고온의 분진을 맞아 노동자 2명이 세상을 떠났다. 세아베스틸은 이를 포함해 1년간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부가 특별감독까지 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세아베스틸 대표는 “모든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그룹사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폭발로 죽었다.

8. 중대재해 “처벌”법이 되어야 한다.

2023년 군산의 노동안전은 처참하다. 10명 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다. 법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도구를 지급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설치하고, 지급하고, 배치하고, 실시

하고, 수립하는 귀찮은 과정을 수행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실제로 군산의 사고도 그 과정들이 모두 생략됐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다. 귀찮다고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2023년 군산에는 안전교육도, 안전시설과 안전도구도 없었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도 않았다. 작업계획서 작성은 법전의 글자 속에만 존재한다. 귀찮은 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어야 된다. 실제 작동권을 가진 사람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법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어려운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간단하다. 실제 사업장을 변화시킬 작동권을 가진 자(기업총수나 대표이사)가 위 과정들이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이다. 실권자의 명령이 작동하도록 하려면 실권자들이 처벌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이유다.

04

전북노동브리프



동향

- 2023년 2분기 전북지역 고용 · 노동 · 산업 · 가계
동향



전북노동브리프 Jeonbuk Labor Brief_____

2023년 2분기 전북지역 고용·노동·산업·가계 동향*

김연택(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전북지역 고용·노동현황

1) 취업자 현황

〈표 1〉 2023년 2분기 전라북도 취업자 현황(2018~2023)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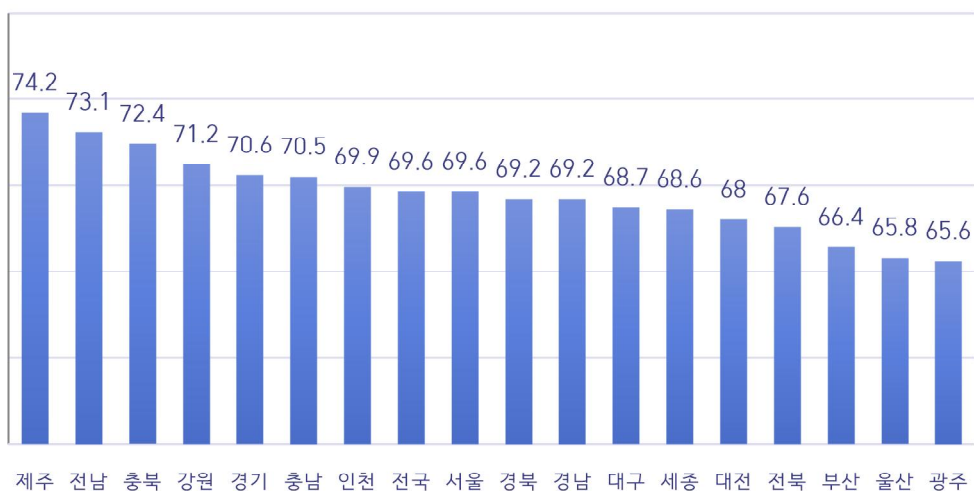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5세 이상 인구		1,569	1,564	1,556	1,556	1,557	1,553
경제활동인구		955	965	956	984	1,011	1,019
성별	남성	547	542	542	547	556	549
	참가율	71.2	70.7	71.0	71.5	72.5	71.6
	여성	408	423	414	434	455	470
	참가율	51.0	53.1	52.2	55.3	57.5	59.7
실업자		29	26	27	22	25	29
실업률		3.0	2.6	2.8	2.2	2.5	2.8
청년실업률		12.0	9.4	11.0	8.8	7.5	12.2
취업자		926	940	929	962	986	990
고용률		59.0	60.1	59.7	61.9	63.3	63.7

* 본 문서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참고자료 참조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령별	15~29세	99	106	87	103	110	103
	고용률	31.2	34.1	29.0	35.2	38.8	37.4
	30대	161	152	147	141	135	144
	고용률	76.0	74.9	75.3	75.0	73.5	79.9
	40대	221	217	204	206	209	198
	고용률	79.5	80.3	77.1	79.7	82.5	80.4
	50대	223	225	228	224	329	231
	고용률	76.2	76.1	77.8	77.0	78.3	79.2
	60세 이상	223	240	264	289	303	314
	고용률	47.5	49.5	52.3	54.9	55.7	56.1
산업별	15~64세	784	786	757	776	784	775
	고용률	64.1	65.0	63.7	66.0	67.4	67.6
	농림어업	166	174	189	179	179	175
	제조업	119	125	126	118	113	127
	건설업	65	88	77	78	76	74
	도소매음식숙박업	159	149	144	163	181	16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32	327	316	341	371	378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5	76	76	83	64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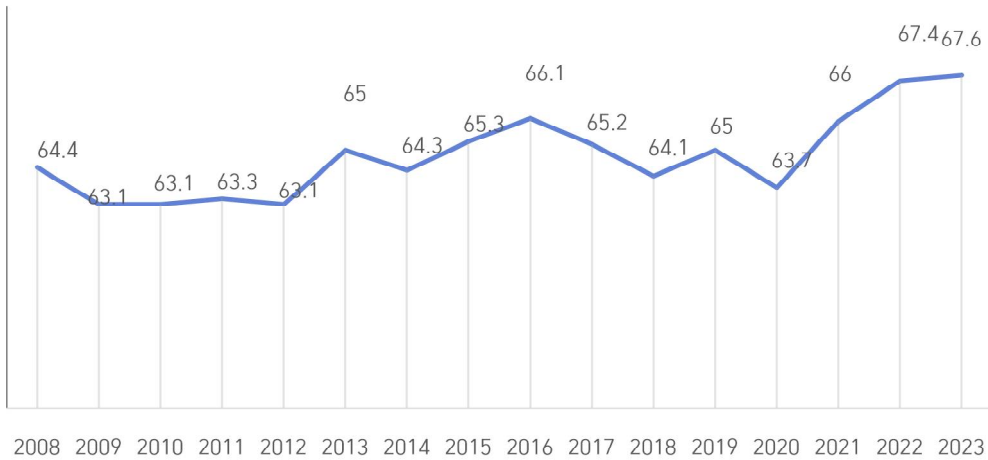
[그림 1] 각 시도별 2023년 2분기 고용률 비교(15~64세, 높은 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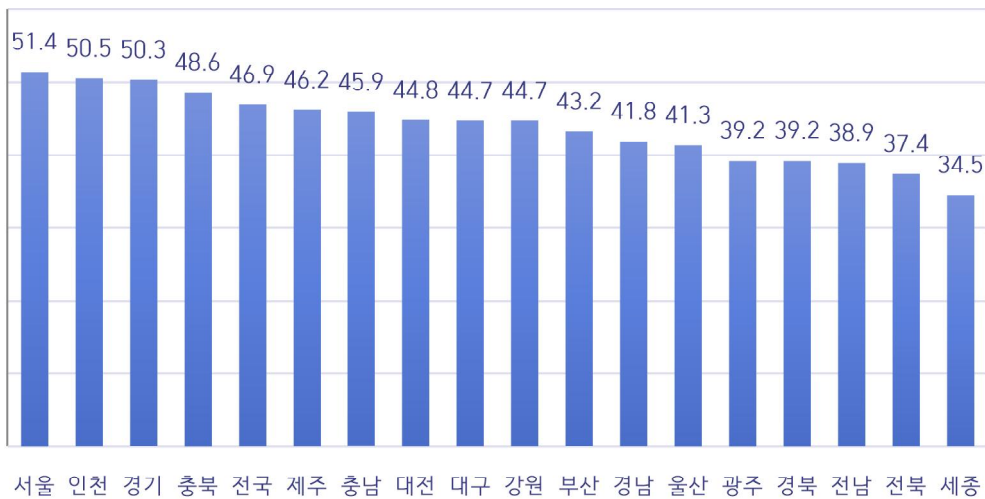
[그림 2] 2분기 전북지역 연도별 고용률 비교(15~64세)

(단위: %)



[그림 3] 각 시도별 2023년 2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 비교(높은 순)

(단위: %)



15세 이상 인구는 1,553천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천명 감소하였으며, 전분기 대비 2천명이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1,019천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8천명이 증가하였고, 전분기 대비 38천명이 증가하였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 동분기대비 남성은 7천명(-0.9%p) 감소한 반면, 여성은 15천명(+2.2%p) 증가하였다. 전분기 대비 남성은 6천명(+1.0%p), 여성은 32천명(+4.1%p) 각각 증가하였다.

실업자는 전년 동분기 대비 4천명(+0.3%p), 전분기 대비 1천명 (-) 각각 증가하였다. 청년실업률은 전년동분기 대비 4.7%p, 전분기 대비 3.2%p 각각 상승했다.

취업자는 전년 동분기 대비 4천명(+0.4%p), 전분기 대비 36천명(+2.4%p) 각각 증가하였다. 15~64세 취업자는 전년 동분기 대비 9천명(+0.2%p) 감소한 반면, 전분기 대비 9천명(+1.1%p) 증가했다. 15~64세 고용율 (OECD 기준)은 67.6%로 17개 광역 시도중 14번째이며, 전국 평균에 비해 2.0%p 낮다.

연령별 취업자수는 전년동분기 대비 29세 이하와 40대는 감소한 반면, 30대와 50대 이상은 증가하였다.

산업별 취업자수는 전년동분기 대비 농림어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감소한 데 반해, 제조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탄금금융업은 증가하였다.

2) 종사상 지위별 고용 현황

(1) 비임금 취업자 현황

〈표 2〉 2023년 2분기 기준 비임금 취업자 현황(전국/전북, 2018~2023)

(단위 : 천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비임금취업자	6,861	6,803	6,658	6,630	6,672	6,723
		25.4	25.0	24.8	24.1	23.5	23.4
	자영업자	5,707	5,681	5,578	5,571	5,669	5,770
		21.1	20.8	20.8	20.3	20.0	20.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47	1,563	1,378	1,307	1,382	1,422
		28.9	27.5	24.7	23.5	24.4	24.6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60	4,119	4,200	4,264	4,288	4,347
		71.1	72.5	75.3	76.5	75.6	75.4
	무급 가족종사자	1,154	1,121	1,080	1,059	1,003	953
		4.3	4.2	4.0	3.8	3.5	3.3
전북	비임금취업자	315	315	329	337	343	342
		34.0	33.5	35.4	35.0	34.8	34.5
	자영업자	237	241	251	257	263	262
		25.6	25.6	27.0	26.7	26.7	26.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7	33	33	34	44	39
		15.6	13.7	13.1	13.2	16.7	14.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00	208	218	224	219	223
		84.4	86.3	86.9	86.8	83.3	85.1
	무급 가족종사자	78	74	79	80	80	80
		8.4	7.9	8.4	8.3	8.1	8.0

전국적으로 비임금 취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데 반해, 전북지역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전북지역 비임금취업자 비중은 34.5%로 전년 동분기 대비 0.3%p 낮으나, 전분기 대비 0.7%p 높다. 동분기 전국 평균(23.4%) 대비 11.1%p 높다.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북지역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2020년)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2023년 2분기 기준 자영업자 비중은 26.5%로 전년 동분기 대비 0.2%p, 전분기 대비 0.4%p 각각 낮다.

2023년 2분기 기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14.9%로 동분기 전국평균(24.6%)에 비해 9.7%p 낮다. 전년 동분기 대비 1.8%p, 전분기 대비 1.4%p 각각 낮다. 이는 전북지역 자영업의 영세성과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증한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전국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전북지역은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완만하다. 2023년 2분기 기준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8.0%로 전년 동분기 대

비 0.1%p 낮으나, 전분기 대비 1.1%p 높다. 동분기 전국평균(3.3%)에 비해서도 4.7%p 높다.

많은 자영업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또는 퇴출)되고,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창업하거나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농업, 특수고용직 직종(플랫폼 등)에 취업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현실은 전북지역의 고용구조가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자영업의 영세성과 열악한 근로조건과 수입규모를 감안할 때, 경제적 약자로서의 사회적 지원과 구조적인 해결이 요구된다.

(2) 임금취업자 현황

〈표 3〉 2023년 2분기 기준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 현황 (전국/전북, 2018~2023)

(단위 : 천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취업자 수	27,019	27,256	26,849	27,467	28,347	28,693
	임금노동자	20,159	20,453	20,191	20,837	21,675	21,970
		74.6	75.0	75.2	75.9	76.5	76.6
	상용	13,730	14,077	14,458	14,787	15,696	16,230
		68.1	68.8	71.6	70.7	72.4	73.9
	임시	4,968	4,914	4,416	4,764	4,789	4,659
		24.6	24.0	21.9	22.9	22.1	21.2
	일용	1,461	1,462	1,318	1,286	1,190	1,082
		7.3	7.2	6.5	6.4	5.5	4.9
전북	취업자 수	926	940	929	962	986	990
	임금노동자	611	625	600	625	643	648
		66.0	66.5	64.6	65.0	65.2	65.5
	상용	388	398	411	430	440	452
		63.5	63.7	68.5	68.8	68.4	69.7
	임시	162	163	138	151	166	154
		26.5	26.1	22.2	24.2	25.8	23.8
	일용	61	65	51	44	36	42
		10.0	10.2	9.3	7.0	5.8	6.5

임금노동자 비중은 전국적으로는 상승세이나, 전북지역은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전북지역 전체취업자대비 임금노동자 비중은 2023년 2분기 기준 65.5%로 전년 동분기 대비 0.3%p 높은 반면, 전분기 대비 0.7%p 낮다.

전북지역 상용노동자 비중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다. 2023년 2분기 기준 69.7%로 전년 동분기 대비 1.3%가 높은 반면, 전분기 대비 0.9%p 낮다. 동분기 전국평균(73.9%) 대비 4.2%p 낮다.

전북지역 임시직 노동자 비중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비해 하락하였다. 2023년 2분기 기준 23.8%로 전년 동분기 대비 2.0%p 낮은 반면, 전분기 대비 0.5%p 높다. 동분기 전국 평균(21.2%) 대비 2.6%p 높다.

일용노동자 비중은 2018년 이래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북지역은 2019년과 2023년에 상승하였다. 2023년 2분기 기준 6.5%로 전년 동분기 대비 0.7%p, 전분기 대비 0.4%p 각각 높다. 동분기 전국평균(4.9%)에 비해 1.6%p 높다.

전북지역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전국평균 대비 상용직 비중이 낮고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이 높다.

3) 노동조건 현황

(1)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현황

〈표 4〉 2023년 2분기 전북지역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현황(2018~2023)

(단위 : 천명, 시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전 체〉	27,019	27,256	26,849	27,467	28,347	28,693
	1~14시간	1,080	1,319	1,232	1,540	1,508	1,546
		4.0	4.8	4.6	5.6	5.3	5.4
	15~35시간	4,716	3,600	5,742	4,350	4,369	4,452
		17.4	13.2	21.4	15.8	15.4	15.5
	36~52시간	16,155	17,746	15,605	17,855	18,748	19,025
		59.8	65.1	58.1	65.0	66.1	66.3
	53시간 이상	4,718	4,239	3,193	3,313	3,310	3,295
		17.5	15.6	11.9	12.1	11.7	11.5
	일시휴직	350	353	1,078	409	412	376
		1.3	1.3	4.0	1.5	1.5	1.3
주당평균 취업시간		41.6	41.2	38.1	39.5	39.6	39.6
전북	〈전 체〉	926	940	929	962	986	990
	1~14시간	41	56	47	58	76	79
		4.4	6.0	5.0	6.0	7.7	8.0
	15~35시간	162	148	194	166	167	163
		17.5	15.7	20.9	17.3	16.9	16.5
	36~52시간	562	596	544	612	619	627
		60.7	63.4	58.6	63.6	62.8	63.3
	53시간 이상	156	133	120	120	113	114
		16.8	14.1	12.9	12.5	11.5	11.5
	일시휴직	7	7	25	6	11	7
		0.7	0.7	2.7	0.6	1.1	0.7
주당평균 취업시간		41.0	40.1	38.6	39.4	38.7	38.5

전북지역의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2019년 이후 상승세다. 2023년 2분기 기준 8.0%로 전년 동분기 대비 0.3%p 높고, 전분기(10.3%, 98천명) 대비

2.3%p 낮다. 동분기 전국평균(5.4%)에 비해 2.6%p 높다. 전북지역의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노동자의 비중은 2023년 2분기 기준 16.5%로 전년 동분기 대비 0.4%p, 전분기 (199천명, 20.9%) 대비 4.5%p 각각 낮다. 동분기 전국평균(15.5%)에 비해 1.0%p 높다. 전북지역의 36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노동자의 비중은 2023년 2분기 기준 63.3%로 전년 동분기 대비 1.0%p, 전분기 (544천명, 57.0%) 대비 6.3%p 각각 높다. 동분기 전국평균(66.3%)에 비해 3.0%p 낮다. 전북지역의 53시간 이상 노동자의 비중은 2023년 2분기 기준 11.5%로 전년 동분기 대비 보합세이며, 전분기(97천명, 10.2%) 대비 1.3%p 높다. 동분기 전국평균(11.5%)과 비슷하다.

전북지역의 일시휴직자 비중은 2023년 2분기 기준 0.7%로 전년동분기 대비 0.4%p, 전분기(16천명, 1.7%) 대비 1.0%p 각각 낮다. 동분기 전국평균(1.3%)에 비해 0.6%p 낮다.

전북지역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2023년 2분기 기준 33.5시간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0.2시간, 전분기(36.1시간) 대비 2.6시간이 각각 적다. 동분기 전국평균(39.6시간)에 비해 6.1시간이 적다.

(2) 상용직 월평균 임금

〈표 5〉 전라북도 상용직 월평균 임금(2018~2022년)

(단위 :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월평균 임금 (상승률)	3,259,281	3,405,769	3,447,287	3,581,564	3,717,328
		4.3	4.5	1.2	3.9	3.8
전북	월평균 임금 (상승률)	2,901,251	2,992,628	3,028,036	3,082,279	3,192,759
		5.5	3.1	1.2	1.8	3.6
전국-전북 차이		358,030	413,141	419,251	499,285	524,569

최근 5년(2018년~2022년) 상용직 월평균임금 추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 이후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 산업 경기 현황

1) 제조업

(1) 2분기 전북지역 제조업 현황(2018~2023)

〈표 6〉 2023년 2분기 전라북도 제조업 업황 및 전망

구분		장기 평균 ¹⁾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전북	BSI ²⁾	75	66	69	49	91	86	61	79
	전망	79	71	68	53	84	86	62	77
전국	BSI ²⁾	79	78	75	51	97	85	66	72
	전망	81	79	76	64	95	87	66	71

주 : 1) 2003.1월 ~ 2022.12월까지 평균치이며, 매년 수정됨

2) BSI = 「좋은」응답업체 구성비(%) - 「나쁨」응답업체 구성비(%) + 100

2023년 2분기 평균 전북지역 제조업 BSI¹⁾전망(77)은 전년 동분기 대비 9p 낮은 반면, 전분기 대비 15p 높다. 업황(79)은 전년동분기 대비 7p 낮은 반면, 전분기 대비 18p 높다. 동분기 전국에 비해서 전망은 6p, 업황은 7p 각각 높다.

1)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업가의 경기에 대한 판단, 전망등이 생산, 매출, 투자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지수로서 0~200의 값을 가지며,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보다 많다는 의미임.

〈표 7〉 전라북도 제조업 세부 업황 및 전망(2018~2023)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매 출 ¹⁾	BSI	76	83	57	111	100	70	85
	전망	82	88	63	108	101	72	83
생 산 ¹⁾	BSI	82	89	62	107	98	71	87
	전망	88	92	68	105	100	71	84
신규수주 ¹⁾	BSI	79	85	60	104	96	68	84
	전망	83	86	65	103	96	67	82
가 동 료 ³⁾	BSI	79	87	60	107	98	70	86
	전망	87	88	66	106	100	71	84
채 산 성 ⁵⁾	BSI	80	80	71	87	77	70	80
	전망	80	81	69	87	79	69	78
원자재구입가격 ³⁾	BSI	120	116	104	151	157	125	120
	전망	120	119	107	144	152	124	122
제품판매가격 ³⁾	BSI	97	91	81	113	117	102	100
	전망	96	92	82	111	116	101	101
자금사정 ⁵⁾	BSI	74	79	63	85	81	71	81
	전망	72	81	63	84	80	71	78
제품재고수준 ²⁾	BSI	106	110	108	96	97	109	105
	전망	106	108	112	97	97	109	105
생산설비수준 ²⁾	BSI	107	105	113	103	101	105	102
	전망	106	106	112	103	100	104	102
설비투자실행	BSI	92	93	85	100	99	88	91
	전망	93	94	85	98	100	89	91
인력사정 ²⁾	BSI	90	92	103	82	76	88	88
	전망	92	93	104	89	76	88	88

- 주 : 1) 「확대」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
 2) 「과잉」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응답업체 구성비(%) + 100 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3) 「상승」응답업체 구성비(%) - 「하락」응답업체 구성비(%) + 100
 4) 「계획대비 수정증액」응답업체 구성비(%) - 「계획대비 수정감액」응답업체 구성비(%) + 100
 5) 「호전」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
 6) 「전망」은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1~3월) 전망치 평균

- 매출 BSI: 2023년 2분기 전망(83)은 전년 동분기 대비 18p 낮은 반면, 전분기 대비 11p 높다, 업황(85)은 전년 동분기 대비 15p 낮은 반면, 전분기 대비 15p 높다.

- 생산 BSI: 2023년 2분기 전망(84)은 전년 동분기 대비 16p 낮은 반면, 전분기 대비 13p 높다. 업황(87)은 전년 동분기 대비 11p 낮은 반면, 전분기 대비 13p 높다.
- 채산성 BSI: 2023년 2분기 전망(78)은 전년 동분기 대비 1p 낮은 반면, 전분기 대비 9p 높다. 업황(80)은 전년 동분기 대비 3p, 전분기 대비 10p 각각 높다.
- 자금사정 BSI: 2023년 2분기 전망(78)은 전년 동분기 대비 2p 낮은 반면, 전분기 대비 7p 높다. 업황(81)은 전년 동분기 대비 보합세이고, 전분기 대비 10p 높다.

전년 동분기에 비해 거의 모든 부문에서의 전망 및 실적이 악화된 반면, 전분기에 비해서는 회복세이다.

(2) 제조업 생산동향²⁾

〈표 8〉 2023년 2분기 전라북도 광공업 생산지수(2018~2023)

(단위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2			2023	
							2/4	3/4	4/4	1/4	2/4 ^p
지수	원계열	98.3	91.2	88.4	91.2	94.1	96.2	92.7	98.1	102.6	108.8
	계절조정계열	98.5	91.4	88.4	91.6	94.8	94.2	96.5	95.3	104.6	107.1
증감률	전년동분기비	-2.5	-7.1	-3.0	3.2	3.2	2.0	6.4	1.9	-3.9	-3.5
	전분기비	-1.0	-4.0	-2.3	2.9	0.0	-0.6	2.4	-1.2	-4.8	2.4

주: 2015=100, p는 추정치

2023년 2분기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추정)지수는 108.3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5% 감소한 반면, 전분기 대비 2.4% 증가하였다.

증감율 추이를 보면, 전년동분기 대비 2022년 4분기부터 낮은 상태이며, 분기별로는

2) 2023년 통계는 원자료의 기준이 2020년으로 되어 있어 2015년 통계(가중치: 0.869)로 변환하였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대유행으로 인해 객관적인 지수로 볼 수 없다는 필자의 판단에 근거한다.

2022년 4분기부터 하락하다가 2023년 2분기 소폭 반등했다.

〈표 9〉 2023년 2분기 전라북도 광공업 주요 업종별 생산 증감율(2018~2023)

(단위 :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p
광공업생산지수(불변)	-1.3	-6.3	-10.9	14.3	1.5	-2.6
광업	-7.8	-9.6	21.1	-14.0	-15.1	-0.9
제조업	-2.2	-6.4	-12.7	14.2	2.3	-3.5
의약품	-16.7	-6.0	-16.4	6.4	8.8	12.7
자동차					7.8	109.0
고무·플라스틱	2.5	16.0	11.9	-13.6	14.8	15.0
1차금속			-5.9	7.3	-4.1	-17.7
금속가공	6.8	5.2	0.3	0.4	4.8	-7.4
전자·통신	4.0	-14.7	-27.1	26.6	-6.8	-13.4
화학제품	8.4	-4.7	3.7	18.8	-5.0	7.7
음료	12.1	4.6	29.9	-1.0		
식료품	2.2	4.6	0.1	-1.5	4.1	-7.6
전기·가스업	8.1	-6.3	-2.7	3.2	6.1	-7.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전년 동분기 대비 2023년 2분기 기준 광공업 생산(추정)지수(-2.6%), 광업(-0.9%), 제조업(-3.5%)은 감소한 반면, 전기·가스업은 7.7% 증가하였다.

전년 동분기 대비 2023년 2분기 기준 자동차(12.7%), 기타 제품(109.0%), 음료(15.0%)는 생산이 증가한 반면, 비금속광물(-17.7%), 식료품(-7.4%), 화학제품(-13.4%)은 감소하였다.

2) 비제조업

(1) 비제조업 일반현황

〈표 10〉 2023년 2분기 전라북도 비제조업 업황 및 전망(2018~2023)

구분		장기 평균 ¹⁾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전북	BSI ²⁾	65	61	65	56	70	72	61	73
	전망 ³⁾	69	64	67	55	65	70	64	69
전국	BSI ²⁾	75	81	73	55	81	84	73	76
	전망 ³⁾	77	82	75	53	80	84	72	76

주 : 1) 2003.1월 ~ 2022.12월까지 평균치이며, 매년 수정됨

2) BSI = 「좋은」응답업체 구성비(%) - 「나쁨」응답업체 구성비(%) + 100

3) 전월에 조사된 당해(1~3월)의 전망BSI 평균

2023년 2분기 평균 전북지역 비제조업 전망 BSI(69)는 전년 동분기 대비 1p 낮은 반면, 전분기 대비 5p 높다. 업황 BSI(73)는 전년 동분기 대비 1p, 전분기 대비 12p 각각 높다. 동분기 전국대비 전망 BSI는 7p, 업황 BSI(73)는 3p 각각 낮다.

〈표 11〉 2분기 전라북도 서비스업 업황 및 전망(2018~2023)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매출 ¹⁾	BSI	69	77	55	77	83	76	82
	전망	71	77	56	73	81	76	80
채산성 ²⁾	BSI	78	82	65	78	81	66	77
	전망	81	83	64	78	82	69	75
자금사정 ²⁾	BSI	75	75	60	78	81	66	75
	전망	76	77	59	76	80	68	72
인력사정 ³⁾	BSI	80	81	85	80	74	69	72
	전망	85	84	86	81	79	68	74

주: 1) 「확대」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전년동월비)

2) 「호전」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전월비)

3) 현재 수준「과잉」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응답업체 구성비(%) + 100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4) () 내는 전월에 조사된 당해 분기(04-06월) 전망 BSI 평균치

- 매출 BSI: 2023년 2분기 전망(80)은 전년 동분기 대비 1p 낮은 반면, 전분기 대비 4p 높다. 업황(82)은 전년동분기 대비 1p 낮은 반면, 전분기 대비 6p 높다.
- 재산성 BSI: 2023년 2분기 전망(75)은 전년 동분기 대비 7p 낮은 반면, 전분기 대비 6p 높다. 업황(77)은 전년 동분기 대비 4p 낮은 반면, 전분기 대비 11p 높다.
- 자금사정 BSI: 2023년 2분기 전망(72)은 전년 동분기 대비 8p 낮은 반면, 전분기 대비 4p 높다. 업황(75)은 전년 동분기 대비 6p 낮은 반면, 전분기 대비 9p 높다.
- 인력사정 BSI: 2023년 2분기 전망(74)은 전년 동분기 대비 5p 낮은 반면, 전분기 대비 6p 높다. 업황(72)은 전년 동분기 대비 2p 낮은 반면, 전분기 대비 6p 높다.

전년 동분기 대비 모든 부문에서 업황과 전망이 악화되었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2) 업종별 서비스업 생산 증감 현황

〈표 12〉 2분기 전라북도 서비스업 주요 업종별 생산(불변)지수(2018~2023)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
서비스업생산지수(불변)	101.1	101.9	101.1	104.3	111.2	109.2	113.1
수도·하수 폐기물처리	103.6	98.6	105.4	111.5	106.3	88.8	105.2
도소매	103.7	102.4	102.5	103.7	107.2	104.4	106.2
운수·창고	120.2	118.0	101.2	107.8	113.8	114.6	123.6
숙박·음식점	124.6	123.2	101.6	102.2	124.8	116.0	118.7
정보통신	98.6	98.1	95.1	98.3	103.4	99.8	97.9
금융·보험	86.0	87.1	99.5	103.6	112.5	119.7	120.2
부동산	86.1	86.8	99.6	93.4	118.5	133.8	128.7
전문·과학·기술	108.5	112.5	113.5	116.3	117.6	94.0	115.7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㉑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106.4	104.3	97.7	101.5	102.5	104.5	105.2
교육	104.8	102.7	101.7	103.0	101.3	101.9	99.3
보건·사회복지	88.8	96.0	97.9	101.8	110.7	112.9	112.0
예술·스포츠·여가	115.2	128.4	102.8	129.2	185.4	116.9	178.6
협회·수리·개인	109.7	106.8	97.2	106.3	112.0	111.2	132.5

주 : 2020년=100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023년 2분기 전북지역 서비스업 (불변)생산(추정)지수는 113.1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7% 높고, 전분기 대비 3.6% 높다.

전년 동분기 대비 정보통신(-5.3%), 숙박·음식점업(-4.9%) 등에서 낮으나, 협회·수리·개인 서비스업(18.3%), 운수 및 창고업(8.6%), 부동산업(8.6%), 금융·보험(6.8%) 등에서 높다.

전분기 대비로는 부동산업(-3.6%), 교육서비스업(-2.6%)등에서 낮으나, 예술·스포츠·여가(52.8%), 전문·과학기술(23.1%), 협회·수리·개인 서비스업(19.2%),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18.5%)등에서 높다.

2023년 2분기 도소매업 생산(추정)지수는 106.2로 전년 동분기 대비 0.9% 낮으나, 전분기 대비 1.7% 높다. 2023년 2분기 보건·사회복지 생산(추정)지수는 112.0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2% 낮으나, 전분기 대비 0.8% 높다.

(3) 2분기 소매판매 현황(2018~2023)

〈표 13〉 2분기 전라북도 소매판매 판매(불변)지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P)}
소매판매액지수	100.3	99.6	107.1	102.2	100.7	98.6	104.0
대형소매점	108.9	99.7	96.1	99.7	98.2	98.6	98.2
백화점	111.1	96.2	93.7	93.3	86.6	90.2	86.2
대형마트	99.9	100.7	103.0	98.0	100.1	99.0	100.4
슈퍼마켓 잡화점 및 편의점	94.9	94.6	110.8	105.1	97.2	102.7	110.6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103.0	102.9	108.1	102.1	104.6	95.9	103.0
전문소매점	-0.7	1.6	-3.8	-1.1	8.6	-5.3	

주 : 2020년=100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023년 2분기 소매판매액(추정)지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3.3% 높고, 전분기 대비 5.5% 낮다.

전년 동분기 대비 대형마트(-0.5%), 전문소매점(-1.5%)은 감소하였으나, 슈퍼마켓·잡화점 및 편의점(0.3%),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13.8%)은 증가하였다. 전분기 대비 대형소매점(-0.4%), 대형마트(-4.4%)은 감소하였으나,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1.4%),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7.7%), 전문소매점(7.4%)은 증가하였다.

3) 건설업

〈표 14〉 2분기 전북지역 건설수주 현황(2018~2023)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P)}
전체수주액		1,542,984	644,036	447,356	926,175	1,289,372	1,015,683
공종별	건축	556,478	523,353	344,998	489,049	927,940	406,472
	토목	986,506	120,683	102,358	437,126	361,432	609,211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p
발주자별	공공	677,391	149,409	128,778	410,932	443,902	634,286
	민간	850,756	493,867	287,031	514,622	802,509	380,195
	국내외국기관	456	581	54	621	1,425	1,202
	민자	14,381	179	31,493	0	41,536	0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건설경기동향조사

2023년 2분기 건설수주(추정)액은 1조 157억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약 2,737억이 감소하였다.

공종별에서는 전년 동분기 대비 건축이 5,215억이 감소한 반면, 토목은 2,478억이 증가하였다. 발주자별에서는 전년 동분기 대비 공공은 1,904억이 증가한 반면, 민간은 4,223억이 감소하였다. 국내외국기관과 민자도 감소하였다.

2023년 2분기 건설수주의 특징은 전년동분기 대비 토목과 공공이 증가하였다. 즉,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4) 수출입 통계

(1) 주요품목별 수출 동향

〈표 15〉 2분기 전라북도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2018~2023)

(단위: 백만\$,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 체	수출액	2,030.9	1,728.4	1,255.4	2,000.9	2,145.1	1,985.8
	증감	26.5	-14.9	-27.4	59.4	7.2	-7.4
기타 일반기계류	수출액	204.7	185.6	160.9	232.3	228.8	316.1
	증감	12.1	-9.3	-13.3	44.4	-1.5	38.2
경공업 기타제품	수출액				21.6	25.6	49.3
	증감				22.1	18.5	92.6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타 화학제품	수출액		188.8	137.5	234.8	209.2	221.3
	증감		23.4	-27.1	70.7	-10.9	5.8
화물차	수출액	251.1	213.9	136.5	226.1	262.6	270.6
	증감	-11.8	-14.8	-36.2	65.6	16.1	3.0
회로보호 접속기	수출액					2.5	10.2
	증감					-59.1	302.4
화학섬유	수출액			49.1	56.4	35.6	0.2
	증감			-9.6	14.7	-36.8	-99.4
철강 봉 및 형강	수출액				82.7	81.0	39.4
	증감				101.5	-2.1	-51.4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제품	수출액		114.6	87.8	172.4	171.3	116.9
	증감		-28.7	-23.4	96.3	-0.6	-31.7
비철금속	수출액		138.6	103.6	201.3	278.6	221.5
	증감		16.9	-25.3	94.3	38.4	-20.5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	수출액	358.7	206.6	121.0	204.4	212.7	146.3
	증감	221.3	-42.4	-41.4	68.9	4.1	-31.2

주 : 전년동분기대비

2023년 2분기 전북지역 수출(추정)액은 전년 동분기 대비 7.4%가 감소한 1,985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기타 일반기계류, 경공업 기타제품, 기타 화학제품, 화물차, 회로보호접속기 등이 증가하였으나, 화학섬유, 철강 봉 및 형강,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제품, 비철금속,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 등이 감소하였다.

(2) 주요품목별 수입 동향

〈표 15〉 2분기 전라북도 주요품목별 수입액 및 증감

(단위 : 백만\$,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o
전체	수입액	1,362.8	1,364.7	1,206.7	1,481.0	1,672.8	1,449.3
	증감률	22.3	0.1	-11.6	22.7	13.0	-13.4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료	수입액	149.9	159.0	154.2	161.1	196.7	231.6
	증감률	30.0	6.0	-3.0	4.5	22.1	17.7
어류	수입액				12.8	18.2	35.4
	증감률				64.8	41.5	94.8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				0.8	2.3	12.3
	증감률				-70.0	205.2	430.9
기타 자본재	수입액				56.1	52.8	62.7
	증감률				55.5	-6.0	18.9
철강 궤	수입액					0.0	5.3
	증감률					16,376.9	19,064.5
비철금속 설	수입액			28.7	66.0	65.8	42.4
	증감률			-41.4	129.8	-0.3	-35.7
기타 석유제품	수입액					27.8	2.7
	증감률					52.0	-90.3
발전기	수입액				40.5	29.1	0.1
	증감률				4.9	-28.1	-99.6
알루미늄	수입액	69.2	48.1	45.7	39.1	107.0	73.8
	증감률	15.5	-30.4	-5.0	-14.4	173.3	-31.0
목재	수입액	78.7	64.7	43.6	34.3	86.7	47.9
	증감률	124.8	-17.8	-32.5	-21.5	153.2	-44.7

주 : 전년동분기 대비

2023년 2분기 수입(추정)액은 1,449.3백만달러로 전년 동분기 대비 223.5백만달러 (13.4%) 감소하였다. 사료, 어류, 반도체 제조용 장비, 기타 자본재, 철강 궤 등이 증가하였으나, 비철금속 설, 기타석유제품, 발전기, 알루미늄, 목재 등이 감소하였다.

3. 가계동향³⁾

1) 소비자심리지수(CCSI⁴⁾)

〈표 16〉 2분기 소비자심리지수(2018~2023년)

(단위: %p)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전북	108.4	101.0	85.5	103.9	103.4	86.9	92.2
전국	106.8	99.0	78.1	105.9	100.9	91.0	97.9

주: 2022년 3분기(7월)부터는 실태본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2023년 2분기 중 전북지역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92.2로 전년 동분기 대비 11.2p 낮으며, 전분기 대비 5.3p 높다. 동분기 전국지수에 비해 5.7p 낮다. 2022년 7월부터 표본이 바뀌어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도, 비관적인 응답이 우세하다.

3) 월별로 발표되는 각 지수의 분기 단위 평균값임.

4) 소비자심리지수(CCSI): 한국은행이 소비자의 응답결과를 집계하여 작성하고 있는 17개 개별지수 중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유용한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선택, 이를 합성하여 작성한 종합지수임. 장기평균치(2003년~2021년)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 의미임. 매년 변경될 수 있음.

2) 소비자동향지수(CSI⁵⁾)

〈표 18〉 2분기 전라북도 소비자동향지수(2018~2023)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주요지수	현재생활형편 ¹⁾	96	92	82	90	91	82	85
	생활형편전망 ²⁾	102	97	89	100	95	83	87
	가계수입전망 ²⁾	101	99	89	97	99	91	93
	소비지출전망 ²⁾	108	107	96	105	114	105	107
	현재경기판단 ¹⁾	90	75	46	85	76	48	60
	향후경기전망 ²⁾	103	84	74	102	84	57	68
여타지수	취업기회전망 ²⁾	99	85	71	95	93	64	70
	금리수준전망 ²⁾	125	107	79	113	139	120	108
	가계저축전망 ²⁾	100	97	89	96	98	86	88
	가계부채전망 ²⁾	97	99	99	99	99	103	99
	주택가격전망 ³⁾	103	93	97	122	114	76	94
	임금수준전망 ³⁾	123	117	105	116	118	110	114

주: 1)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2)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3) 현재와 비교한 1년후 전망

2023년 2분기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반적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수치가 낮은 반면,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수치가 높다.

3) 소비자 물가동향

2018년 이후 소비자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2021년 4분기부터 물가가 대

5) 소비자동향(태도)지수(CSI): 장래의 소비지출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 경제상황과 생활형편, 가계수입, 소비지출, 고용, 물가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응답을 가중평균해 작성한 이 지수는 일반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서 경기동향 파악 및 예측에 유용한 정보로 사용됨. 지수의 값은 0~200사이에서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크면 그 반대임.

폭 상승하였다. 2023년 2분기 기준 물가상승율은 전년 동분기 대비 2.8%, 전분기에 비해 0.4% 상승하였다. 특히,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⁶⁾는 전년 동분기 대비 2.5%, 전분기 대비 0.4% 상승하였다.

상품물가지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2.5%가 상승했으며, 특히, 전기·수도·가스요금⁷⁾이 28.1%가 상승하였다. 서비스물가는 전년 동분기 대비 3.1% 상승했다. 특히 개인서비스(오락 및 문화, 음식 및 숙박)가 5.2% 상승하였다.

하반기에도 공공서비스 물가 등이 이미 인상되었거나,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영향으로 관련 물가가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해 금리인상뿐 아니라,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9〉 2분기 전라북도 소비자물가지수(2018~2023)

(단위 :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소비자 물가지수		98.9	99.6	99.5	102.1	108.0	110.6	111.0
	등락	1.7	0.7	-0.1	2.6	5.8	4.9	2.8
지출 목적별	생활물가지수	98.9	99.7	99.5	102.9	110.2	112.6	113.0
	등락	1.7	0.8	-0.2	3.4	7.2	5.5	2.5
상품물가		98.8	99.1	99.0	102.5	110.5	113.1	113.4
	등락	1.7	0.3	-0.1	3.6	7.8	6.1	2.5
	농축산물	90.3	62.5	96.5	107.6	109.9	113.5	112.3
	등락	3.3	2.5	4.3	11.4	2.2	4.3	2.2
	공업제품	101.1	100.8	99.1	101.8	111.1	111.6	111.8
	등락	1.8	-0.3	-1.7	2.7	9.1	4.5	0.7
	전기 수도 가스	100.7	102.0	103.3	98.3	106.5	128.2	131.1
	등락	-2.8	1.3	1.3	-4.8	8.3	27.3	23.1
서비스물가		98.7	99.8	100.0	101.6	105.1	107.7	108.3

6) 구입빈도와 가격변동에 민감한 쌀, 배추 등 141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물가지수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등락	1.7	1.1	0.2	1.5	3.5	3.6	3.1
	집세	100.2	100.2	100.0	100.1	100.9	101.3	101.3
	등락	0.3	-0.0	-0.2	0.2	0.8	0.7	0.4
	공공서비스	102.6	102.3	100.7	101.1	102.8	103.2	102.0
	등락	0.4	-0.3	-1.6	0.4	1.7	0.4	-0.8
	개인서비스	96.7	98.6	99.7	102.1	107.0	111.0	112.6
	등락	2.5	2.0	1.1	2.4	4.8	5.5	5.2

주: 2020=100, 등락은 전년동분기대비

참고 자료

- 광주·전남·전북·제주 노동시장동향 (매월, 고용노동부)
-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 (매월,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 전라북도 고용동향 (매월,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동향(매월,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 호남권 지역경제동향 (분기별, 호남지방통계청)
-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매월, 한국은행 전북본부)
-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매월, 한국은행 전북본부)
- 분기별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한국은행 전북본부)
- 수출입현황 (매월, 관세청 통관기획과)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등
- 전북지역 고용·노동·산업·가계 동향 보고서(매월, 분기별, 연도별- 김연탁)

05

전북노동브리프



현장

- 2023년 3분기 전라북도 주요 노동 소식



전북노동브리프 Jeonbuk Labor Brief_____

2023년 3분기 전라북도 주요 노동 소식

정리 : 조용화(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군산 시립예술단 임금체불과 단체협약 개악 시도

군산시 2023년 예산에서 군산시립예술단 직책수당이 전액 삭감되면서 예술단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예산 삭감은 군산시의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와 공공운수노조문화예술지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해고 관련 조항의 추가를 요구하는 등 노-사 간 협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법적 지위를 갖는 단체협약을 시의회가 무시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라며 출근 시위,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 군산 장애인콜택시 부당노동행위

군산장애인콜택시 수탁기관이 2022년 10월 군산시각장애인연합회로 바뀐 이후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해왔으나 사용자 측이 기본합의서 작성 이후 교섭에 불참하고 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군산시각장애인연합회의 교섭 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전북2023부노7)했으나 9월 현재까지도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수탁기관 변경 이후 휴일 없이 14일~19일 계속 근로를 시키

거나 동의절차 없이 야간 근무를 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노동조합은 위탁기관인 군산시를 상대로 집회, 피켓팅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군산시는 청사의 관리 및 안전보호를 명목으로 청사 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겠다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반복된 부당해고

군산시가족센터는 호원대학교에 수탁된 민간위탁 기관이다. 군산시가족센터 노동자들이 2021년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표적 징계해고가 이루어져 2022년 3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군산시가족센터가 교섭해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분회장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군산시 예산으로 부담하면서 수탁기관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비용을 처리해줬다. 그 이후 군산시가족센터는 부당해고 복직자를 재차 해고 통보한 상황이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군산시가족센터가 노동관계법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위증교사, 국비 부정지출 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조합은 군산시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군산시청 앞 집회,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 민주노총전북본부, 노조탄압 묵인한 군산시청 규탄 결의대회 개최

군산시청 혹은 그 수탁기관 소속 노동조합 탄압이 반복되면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전북본부 결의대회가 10월 16일 군산시청 앞에서 개최되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군산시는 민간위탁운영사들의 부당해고·교섭거부·부당징계·횡령배임 등 각종 탄압과 의혹에도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하며 심지어 “군산시 자신이 사용자로 있는 군산시립예술단 노동자들이 군산시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아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에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한 기초지자체에서 한 해에 소속기관 2곳

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일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군산시 소속 기관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가 반복되는데도 근로감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읍택시 노동자 생존권 보장 요구 천막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유)정읍택시와 2019년 7월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하고 초과하는 수익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회사는 같은 해 8월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조합원에게 승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같은 해 10월에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회사는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재산보전에 나섰고 2023년 4월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에서 임금체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선고했다. 사측은 6월 14일부로 휴업에 들어갔고 정읍시청은 같은 달 19일에 휴업을 허가했다. 정읍택시는 2020년 7월에도 휴업을 신청하고 정읍시청이 이를 허가했다가 노조의 문제제기 후 철회된 전력이 있다. 노동조합은 정읍시청이 노조 파괴 목적의 위장휴업을 지원한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정읍택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읍시청 앞에서 9월 15일부터 천막농성 중이다.

2023년 가을 | 통권 제3호

전북노동브리프



민주노동총연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 법률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7 우성상가 3층
063-256-5003 | kctu.jbli@gmail.com